

제386회국회
(임시회)

국토교통위원회회의록

제 1 호

국 회 사 무 처

일 시 2021년4월27일(화)

장 소 국토교통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국무위원후보자(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 인사청문회 실시계획서 채택의 건
2. 인사청문회 자료제출 요구의 건
3. 인사청문회 증인·참고인 출석 요구의 건
4.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7834)
5. 건설기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7706)
6. 건설기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7724)
7. 건설기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7831)
8. 건설기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8009)
9.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7370)
10.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7417)
11.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7820)
12. 건축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7863)
13.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8317)
14. 골재채취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8327)
15.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7337)
16.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7503)
17.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7684)
18.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7806)
19.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8275)
20.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8288)
21.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8309)
22.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7458)
23.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7505)
24.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7734)
25.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8224)
26.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7262)
27.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7746)
28.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8249)
29.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8250)
30.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8274)
31.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8278)
32. 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7723)
33.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8173)

34. 국가시범스마트도시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의안번호 2108168)
35. 노후거점산업단지의 활력증진 및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8052)
36.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7940)
37.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8021)
38.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8272)
39.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7441)
40.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8248)
41.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7546)
42.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7881)
43.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7725)
44.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7988)
45.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8155)
46.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8170)
47.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7247)
48.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8251)
49.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8177)
50. 용산공원 조성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7375)
51.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8319)
52. 주거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7329)
53. 주거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7987)
54. 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7502)
55. 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8226)
56.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7420)
57.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7545)
58.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8273)
59.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8235)
60.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7956)
61. 택지개발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7538)
62. 토지분리형 분양주택 공급촉진을 위한 특별조치법안(의안번호 2107981)
63.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7835)
64.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8516)
65. 한국국토정보공사법안(의안번호 2107773)
66.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7278)
67.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7321)
68. 교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7407)
69.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7511)
70.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7522)
71.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8037)
72.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8108)
73. 물류정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7281)
74.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7376)
75.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7675)
76.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8058)
77.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7469)

78.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7711)
 79.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7942)
 80.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7705)
 81. 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7871)
 82.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7925)

상정된 안건

1. 국무위원후보자(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 인사청문회 실시계획서 채택의 건 6
2. 인사청문회 자료제출 요구의 건 7
3. 인사청문회 증인·참고인 출석 요구의 건 7
4.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박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834) 7
5. 건설기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706) 7
6. 건설기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문진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724) 7
7. 건설기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박상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831) 7
8. 건설기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백종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009) 7
9.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송언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370) 7
10.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희국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417) 7
11.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교홍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820) 8
12. 건축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허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863) 8
13.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성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317) 8
14. 골재채취법 일부개정법률안(정동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327) 8
15.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희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337) 8
16.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최종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503) 8
17.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한준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684) 8
18.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신영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806) 8
19.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교홍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275) 8
20.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소병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288) 8
21.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규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309) 8
22.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한무경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458) 8
23.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고민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505) 8
24.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정동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734) 8
25.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명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224) 8
26.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유경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262) 8
27.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신동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746) 8
28.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조오섭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249) 8
29.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허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250) 8
30.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교홍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274) 8
31.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진성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278)	8
32. 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선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723)	8
33.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강기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173)	8
34. 국가시범스마트도시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황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168)	8
35. 노후거점산업단지의 활력증진 및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상훈 의원 대표발의)(의안 번호 2108052)	8
36.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민병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940)	8
37.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송기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021)	8
38.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진성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272)	8
39.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소병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441)	8
40.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조오섭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248)	8
41.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송언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546)	8
42.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소병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881)	8
43.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승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725)	8
44.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홍기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988)	8
45.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원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155)	8
46.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종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170)	8
47.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천준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247)	8
48.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허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251)	8
49.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송재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177)	8
50. 용산공원 조성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진선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375)	9
51.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성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319)	9
52. 주거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심상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329)	9
53. 주거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소병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987)	9
54. 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김진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502)	9
55. 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홍기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226)	9
56.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양경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420)	9
57.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송언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545)	9
58.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김교홍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273)	9
59.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허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235)	9
60.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현승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956)	9
61. 택지개발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예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538)	9
62. 토지분리형 분양주택 공급촉진을 위한 특별조치법안(노웅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981)	9
63.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박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835)	9
64.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정운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516)	9
65. 한국국토정보공사법안(김윤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773)	9
66.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용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278)	9
67.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정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321)	9
68. 교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용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407)	9
69.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김미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511)	9
70.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진선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522)	9
71.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문진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037)	9

72.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오영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108)	9
73. 물류정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위성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281)	9
74.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김교홍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376)	9
75.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현승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675)	9
76.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홍기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058)	9
77.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홍기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469)	9
78.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711)	9
79.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송옥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942)	9
80.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705)	9
81. 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허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871)	9
82.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임호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925)	9

(10시08분 개의)

○위원장 진선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곧 시작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86회 국회(임시회) 국토교통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최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오늘 의사일정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우리 위원회에 위원님 보임이 있어서 말씀드립니다. 3월 26일 자로 더불어민주당의 전용기 위원님께서 우리 위원회로 새로 보임하셨습니다. 환영하고 인사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용기 위원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전용기 위원입니다.

먼저, 존경하는 국토교통위원회 선배·동료 위원님들과 함께하게 되어서 정말 기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부동산 공급 확대와 시장 안정 그리고 임대차 3법 안착과 부동산 투기 근절, 국토 균형발전 등이 과제로 있는 중요한 시기에 국토교통위원이 되어서 이렇게 함께할 수 있다는 것에 막중한 책임감을 느낍니다.

뒤늦게 합류한 만큼 많이 배우고 모자란 부분은 보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진선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리 위원회에 전보된 직원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임주형 입법조사관입니다.

다음은 최예진 주무관입니다.

(인사)

새로 임명되신 기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4월 23일에 임명된 김현준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나오셔서 간략히 인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사장 김현준 존경하는 진선미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김현준입니다.

○위원장 진선미 마이크를 좀 가까이 세워서, 키가 크셔서……

○한국토지주택공사사장 김현준 먼저, 위원님들께 이렇게 인사를 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는 엄중한 시기에 LH 사장으로 취임하게 되어 무거운 책임감과 소명감을 느낍니다.

우선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LH 직원들의 부동산 투기로 인해 국민 여러분께 큰 실망과 심려를 끼쳐 드린 점 이 자리를 빌려 깊이 사죄드립니다.

○위원장 진선미 예, 수고하셨습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사장 김현준 저를 비롯한 LH 전 임직원은 뼈를 깎는 자성의 노력으로 환골탈태하여 다시는 이와 같은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LH를 새로운 조직으로 개혁하고 혁신하겠습니다. 청렴과 공정을 최우선으로 조직을 강력히 쇄신하고 과감한 개혁을 통해 잘못된 관행과 부조리를 확실히 뿌리 뽑겠습니다.

우선 내부통제 시스템을 대폭 강화하고 재산등록제, 부동산 취득제한제 등을 철저히 시행하고 업무 처리 절차와 의사 결정 과정을 공정하고 투명하게 하는 등 조직을 쇄신하겠습니다. LH에 대한 국민적 요구를 겸허히 받아들여 사랑과 신뢰

를 받는 조직으로 반드시 탈바꿈하겠습니다.

2·4 대책 등 정부 주택 공급 정책을 차질없이 수행하여 부동산 시장 안정화와 국민 주거 안정 달성에 모든 역량을 쏟겠습니다.

3기 신도시 사전 청약을 비롯, 주거복지 로드맵에 따른 공공주택 공급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여 무주택 서민의 내집 마련에 최대한 신속히 기여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국민들께 크나큰 심려를 끼쳐 드린 점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새로운 LH, 청렴한 LH로 거듭나 확실한 성과와 지속 가능 경영의 기틀을 마련할 수 있도록 존경하는 위원장님, 여러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진선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4월 22일 임명된 권형택 주택도시보증공사 사장님 나오셔서 간략히 인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사장 권형택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사장으로 새로이 임명된 권형택입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는 각종 보증 공급과 주택도시기금의 안정적 운영 및 도시재생 활성화 등 사회적 책임과 공적 역할을 담당하는 공기업으로서 국민의 주거 안정과 주택 시장 발전에 기여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국민의 주거 복지에 밀접한 영향을 미치는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사장으로 임명되어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며, 제가 가진 모든 역량을 쏟아부어 맡은 바 소임을 다하겠습니다.

그동안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주택에서 도시까지 국민의 더 나은 삶을 책임지는 공기업으로 성장하는 데 많은 격려와 지원을 해 주신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머리 숙여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주택도시보증공사가 국민 주거 복지 향상과 도시재생 활성화에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진선미 수고하셨습니다.

황성규 2차관이 금일 오전 국무회의에 출석하게 됨에 따라서 오늘 회의에 출석하지 못함을 허가하여 달라는 요청이 있어서 이를 승인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국무위원후보자(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에 대한 인사청문회 실시계획서 채택의 건 등 인사청문 관련 안건을 처리한 다음 새로 79건의 법률안을 상정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국회에 방역대책 2단계가 시행 중입니다. 회의장에 계신 모든 분들은 다소 불편하시더라도 마스크를 바르게 착용하시고 회의장 방역수칙을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등 공공기관장은 별도의 장소에 대기하고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은 미리 행정실에 알려 주시면 해당 기관장이 회의장에 배석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 국무위원후보자(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 인사청문회 실시계획서 채택의 건

(10시15분)

○위원장 진선미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국무위원후보자(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 인사청문회 실시계획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지난 4월 22일 자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국무위원후보자 인사청문회 일정 등을 정하기 위해서 위원장이 간사 위원님들과 협의하여 작성한 인사청문회 실시계획서(안)을 채택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 주요 내용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인사청문회는 5월 4일 오전 10시에 실시하고 인사청문회 진행 순서는 국무위원후보자로부터 선서와 모두발언을 청취한 후 위원님들의 질의와 후보자의 답변을 들은 다음에 마지막으로 후보자로부터 최종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인사청문경과보고서는 간사 위원님들과 협의하여 작성하고, 5월 6일 목요일 10시에 개최하여 채택할 예정입니다.

인사청문회에 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인사청문회 실시계획서(안)에 대해서 혹시 의견 있으신 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국무위원후보자(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 인사청문회 실시계획서 채택의 건은 배부해 드린 인사청문회 실시계획서(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청문회 실시계획서와 관련해서 세부적인 사항의 변경에 대해서는 위원장이 간사 위원님들과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도록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2. 인사청문회 자료제출 요구의 건

(10시17분)

○위원장 진선미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인사청문회 자료제출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인사청문회 실시와 관련된 자료제출 요구는 인사청문회법 제12조의 규정에 따르면 위원회의 의결 또는 제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로 할 수 있게 되어 있고, 자료제출 요구를 받은 관계기관은 우리 위원회에 자료제출 기간을 따로 정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5일 이내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는 만큼 관계기관으로 하여금 규정된 기간을 엄수하도록 하겠습니다.

국무위원후보자 인사청문회와 관련해서 위원님들께서 신청하신 자료제출 요구 현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습니다.

그러면 자료제출 요구 건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하 위원님, 말씀하세요.

○하영제 위원 자료 요구를 진즉에 했는데……요새 국토교통부 공무원들이 여러 가지 바쁘신 줄 알고 있는데 자료를 빨리 좀 내 주세요, 차관님부터 좀 챙기셔 가지고. 내가 다시 제출 요구한 자료 목록을 전달할 테니까…… 이게 너무 많아서 읽기가 힘들어서…… 제출은 됐습니다.

○국토교통부장관직무대행 윤성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하영제 위원 조속히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장관직무대행 윤성원 예, 알겠습니다.

○하영제 위원 이걸 좀 이따 나갈 때……

○위원장 진선미 예.

하영제 위원님께서 제출 목록 작성하신 대로 빠르게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다른 분 없으십니까?

○박성민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진선미 예, 박성민 위원님.

○박성민 위원 차관님, 후보자가 농협 정부세종

청사금융센터점에서 대출을 받았다고 하는데 그 대출 받을 당시에 농협에 제출한 사용 목적이 있을 텐데 이것을 농협에 요구를 했더니만 국토부에서 자료를 주지 말라고 했다고 하는데 한번 알아보시고 자료 좀 제출해 주십시오.

○국토교통부장관직무대행 윤성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박성민 위원 2012년 이후에 금융실명거래 통장 내역서 사본도 마찬가지로 또 후보자 배우자의 사인 간 채권 계약서 및 계약 내용 이것을 요구했는데 국토부에서는 묵묵부답입니다. 좀 제출해 주십시오.

○국토교통부장관직무대행 윤성원 예, 제가 가서 전달하겠습니다.

○위원장 진선미 고맙습니다.

그러면 의결 절차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인사청문회 자료제출 요구의 건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인사청문회 증인·참고인 출석 요구의 건

(10시20분)

○위원장 진선미 아직까지 증인·참고인에 대한 출석 요구는 없습니다. 혹여 증인·참고인에 대한 출석 요구가 있으시면 간사 위원들과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사청문회법과 또 인사청문회 일정을 고려하면 증인 등의 출석요구서 송달 시한이 4월 29일 임을 감안하여서 판단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4.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박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834)

5. 건설기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706)

6. 건설기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문진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724)

7. 건설기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박상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831)

8. 건설기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백종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009)

9.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송언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370)

10.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희국 의원

-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417)
11.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교홍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820)
 12. 건축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허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863)
 13.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성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317)
 14. 골재채취법 일부개정법률안(정동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327)
 15.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희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337)
 16.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최중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503)
 17.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한준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684)
 18.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신영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806)
 19.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교홍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275)
 20.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소병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288)
 21.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규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309)
 22.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한무경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458)
 23.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고민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505)
 24.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정동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734)
 25.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명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224)
 26.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유경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262)
 27.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신동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746)
 28.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조오섭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249)
 29.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허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250)
 30.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교홍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274)
 31.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진성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278)
 32. 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선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723)
 33.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강기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173)
 34. 국가시범스마트도시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황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168)
 35. 노후거점산업단지의 활력증진 및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상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052)
 36.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민병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940)
 37.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송기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021)
 38.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진성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272)
 39.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소병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441)
 40.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조오섭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248)
 41.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송언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546)
 42.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소병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881)
 43.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승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725)
 44.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홍기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988)
 45.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원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155)
 46.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종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170)
 47.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천준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247)
 48.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허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251)
 49.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송재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177)

50. **용산공원 조성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진선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375)
51.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성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319)
52. **주거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심상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329)
53. **주거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소병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987)
54. **주택도시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김진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502)
55. **주택도시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홍기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226)
56.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양경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420)
57.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송언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545)
58.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김교홍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273)
59.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허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235)
60.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현승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956)
61. **택지개발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예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538)
62. **토지분리형 분양주택 공급촉진을 위한 특별조치법안**(노웅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981)
63.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박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835)
64.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정운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516)
65. **한국국토정보공사법안**(김윤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773)
66.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용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278)
67.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정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321)
68. **교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용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407)
69.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김미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511)
70.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진선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522)
71.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문진석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108037)

72.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오영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108)
73. **물류정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위성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281)
74.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김교홍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376)
75.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현승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675)
76.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홍기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058)
77.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홍기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469)
78.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711)
79.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송옥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942)
80.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705)
81. **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허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871)
82.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임호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925)

○위원장 진선미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부터 제82항까지 총 79건의 법률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2항의 법률안에 대하여 발의자를 대표해서 심상정 위원님 나오셔서 간략히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상정 의원 존경하는 진선미 국토교통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국토교통위원회 위원 여러분! 정의당 심상정 의원입니다.

좀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오늘 직접 제안설명드리게 된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상정되는 개정법률안이 더 나은 방향으로 보완되고 개정될 수 있도록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주거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각별한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우리나라 주거급여는 매우 빈약합니다. 2021년 기준 주거급여를 받는 가구는 128만 가구로 전체 가구의 6.2%에 머물고 있습니다. OECD 회원국들은 평균 약 10%의 가구에 주거급여를 제공하

는 것에 비하면 턱없이 부족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집이 없는 다수 서민은 무거운 주거비 부담을 감수하고 있습니다. 최근 주택 가격과 임대료는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는 반면에 경기 침체, 고용 불안 등으로 소득은 크게 감소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재난이 장기화되면서 주거비를 감당할 수 없는 가구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제안설명드리는 주거급여법은 주거급여 기준을 높이고 주거급여 대상을 확대하기 위한 두 가지 핵심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하나는 주거급여 기준을 현행 중위소득 43% 이상에서 60% 이상으로 상향하자는 것이고, 또 하나는 부모님과 떨어져 사는 청년 개별 가구에도 주거급여 대상에 포함하자는 것입니다.

현재 취업과 학업을 위해서 부모와 떨어져 사는 많은 청년들이 주거비에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올해부터 부모 가구가 수급 가구인 경우에만 한해서 따로 사는 청년에게도 주거급여를 분리 지급하겠다고 합니다만 여전히 부모 가구의 수급이 전제되어야 함으로 청년들의 대부분은 혜택받기가 어렵습니다. 이에 학업이나 취업 등을 이유로 부모와 독립해서 살고 있는 30세 미만의 청년들도 주거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오늘 제가 이 자리에서 설명드린 주거급여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주거비에 고통받는 사람들에게 작은 버팀목이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님들께서 법률 개정안에 대한 취지를 충분히 이해해 주시고 공감해 주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설명드린 법률안의 내용대로 소위에서 심사숙고해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진선미 수고하셨습니다.

나머지 법률안의 제안설명은 단말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서는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을 순서입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4항부터 제65항까지 62건의 법률안에 대해서 최시역 수석전문위원께서 일괄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최시역 수석전문위원입니다.

국토 분야 법률안 62건에 대한 검토의견을 요약 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요약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박진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개발제한구역에 설치할 수 있는 건축물에 반려동물을 동반할 수 있는 운동·휴식 시설을 추가하는 내용인데, 동물놀이터는 이미 현행 법령에 따라 설치할 수 있는 시설이라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건설기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중 박상혁 의원님 안입니다.

대한건설기계안전관리원을 승계한 한국건설기계안전원을 설립하여 건설기계 안전관리 체계를 강화하려는 것으로 현재 건설기계 전반의 체계적 관리를 위한 전담 조직이 없고 대한건설기계안전관리원은 건설기계 사고 조사 권한이 없다는 점을 고려할 때 대한건설기계안전관리원의 역할을 확대하고 전문성을 활용하기 위해서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입니다.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중 김희국 의원님 안입니다.

하수급인이 수급인에게 부담해야 하는 하자담보책임기간의 기산일을 하도급공사의 완공일 또는 목적물의 관리·사용 개시일에서 하도급공사의 완공일 또는 목적물의 관리·사용 개시일과 수급인의 목적물 인수일 중 먼저 도래한 날로 변경하려는 것으로, 하자보수 책임 이행을 분담하기 위한 명확한 기준을 마련하려는 취지는 타당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다만 수급인·하수급인 간의 기산일만 변경할 경우 발주자·수급인 간의 기산일과 차이가 발생할 수 있고, 발주기관이 하자담보책임기간 기산점을 임의로 설정하지 못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는 관련 단체의 의견도 고려해서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음,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허영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건축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건축물에 대한 해체 허가 이후 별도의 착공신고 절차를 신설하고 해체 공사의 양태에 따라 감리원의 배치 기준을 구분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으로 인명 사고 발생 위험이 높은 해체 공사의 안전관리를 강화한다는 측면에서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다음,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중 김교홍 의원님 안은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의 개념을 도입하고 공공주택의 유형에 이익공유형 분양주택과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을 추가하는 내용으로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은 주민 동의를 바탕으로 추진하여 사회적 갈등을 줄이고 용적률 완화 등을 통해 사업성을 제고할 수 있는 장점이 있는 반면, 주민 동의를 얻는 과정에서 지구 지정 관련 정보 유출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았습니다.

또한 이익공유형 분양주택에 대해서는 별도의 전매제한 기간을 규정하는 대신에 수분양자가 해당 주택을 처분하려는 경우 공공주택 사업자에게 매입을 신청하도록 의무를 부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다음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중 정동만 의원님 안은 공동주택 관리 주체가 관리비 등의 집행 내역을 분석해서 통계 자료로 제공하도록 하려는 내용으로 한국부동산원에 위탁하여 관리하고 있는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의 고도화 사업을 통해 관리 주체의 통계 조작 등을 방지하고 관리비 등의 비리를 근절하는 것이 가능할 것으로 보았습니다.

다음,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김상훈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노후거점산업단지의 활력증진 및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노후거점산업단지 주변의 산업단지, 산업기반시설 등이 입지한 연계 지역을 노후거점산업단지와 함께 경쟁력강화사업지구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노후거점산업단지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만 경쟁력강화사업지구로 지정될 수 있는 연계 지역의 범위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음,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중 진성준 의원님 안은 공공이 정비사업의 시행자로 직접 참여하는 공공 직접시행 정비사업을 도입하려는 내용으로 도심 내 주택 공급 기반을 마련하고 신속한 주거환경 정비를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는 점에서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재산권 행사에 관한 중요한 사안들에 대해서는 토지 등 소유자의 의견 수렴을 강화할 필요가 있고 일정 비율 이상의 주민 동의가 있는

경우 공공정비구역을 해제할 수 있는 요건을 마련하는 등의 보완이 필요할 것으로 보았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중 조오섭 의원님 안은 주거 중심의 지역거점을 조성할 필요가 있는 지역을 주거재생 혁신지구로 지정하고 주택 공급 활성화를 위한 특례를 부여하려는 내용으로 대도시권에서의 신속한 주택 공급으로 주거 안정에 기여할 수 있는 측면이 있으나 실거주 목적으로 토지 등을 매수한 사람이 현금 청산 대상이 되어서 퇴거해야 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음, 16페이지 하단 부분입니다.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중 허영 의원님 안은 소규모 주택정비 관리계획을 수립해서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을 계획적, 효율적으로 추진하는 한편 역세권이나 준공업 지역에서 소규모로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소규모 재개발 사업을 도입하는 등의 내용으로 주택 공급을 활성화할 수 있는 측면이 있으나 실거주 목적으로 토지 등을 매수한 사람이 건축물을 분양받지 못하게 되는 문제도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음, 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택도시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중 홍기원 의원님 안은 주택도시시기금의 용도에 공공분양주택의 공급을 촉진하기 위한 부동산투자회사 발행증권에 대한 구입을 추가하고 주택도시보증공사가 행할 수 있는 보증의 총액 한도를 자기자본의 50배에서 60배로 확대하려는 것으로 현재 도시재생 활성화 지역에서 공공주택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설립된 부동산투자회사의 발행증권 매입이 가능하다는 점을 감안할 때 바람직하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보증한도 확대 필요성은 다른 기관이 보증을 제공할 수 있는지의 여부와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음, 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중 김교홍 의원님 안은 공공주택 복합지구·공공정비구역·주거재생혁신지구에서 공급하는 주택은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하되 일정 면적 이하의 주거재생혁신지구에서 건설·공급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분양가상한제 적

용을 배제하려는 것으로 실수요자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할 수 있다는 점에서 바람직한 측면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현행법은 분양가상한제 적용이 배제되는 정비사업의 규모를 판단할 때 면적뿐만 아니라 세대수까지 고려하고 있으므로 일정 세대수 미만의 주거재생혁신지구사업의 경우 분양가상한제 적용을 배제하도록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위원장 진선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6항부터 제82항까지 17건의 법률안에 대해서 이지민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지민 전문위원입니다.

요약 검토보고 1쪽입니다.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중 김정호 의원안입니다.

개정안의 내용은 민간 공항에서 발생하는 소음 피해에 대한 금전적 보상인 소음피해지원금 제도를 도입하고 주민지원사업에 의료사업과 건강지원사업을 추가하여 소음대책지역 주민들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려는 것입니다.

소음피해지원금의 도입에 대해서는 군 공항 등 군사시설의 경우 이미 소음 피해에 관한 금전 보상 제도가 마련되어 있다는 점, 판례가 공항소음 손해배상 소송에서 국가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고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긍정적인 측면이 있으나 보상금 지원에 따른 국가 재정 규모, 기존 소음대책사업의 개편 방향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음, 4쪽입니다.

도로법 개정안 중 문진석 의원안은 도로관리청이 도로 인근 마을 주민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소관 도로의 일정 구간을 마을주민보호구간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마을주민 보호를 위해 필요한 조치와 지정 절차 등을 규정함으로써 마을주민보호구간 사업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보행자 안전을 제고하려는 것입니다.

다만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에 따라 보행우선구역이 지정되어 자동차 운행 속도 제한, 보행안전시설물 설치 등의 관리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보행우선구역과 마을주민보호구간이 중복되는 측면이 있으므로 마을주민보호구간 사업의 법적

근거를 도로법에 별도로 신설하는 것이 타당한지 논의가 필요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다음, 5쪽입니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 중 김교홍 의원안입니다.

개정안은 농어촌 및 대중교통 부족 지역에 한하여 허용하고 있는 현행 수요응답형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을 광역교통특별대책지구에서 대중교통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경우 복수의 교통수단 간 연계를 위해 환승센터로 비정기 운행하는 경우 등에도 이를 도입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으로 다양한 교통 서비스 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는 점에서 바람직한 측면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대중교통이 취약한 지역을 중심으로 기존 여객운송사업의 보완을 위해 운영하도록 한 수요응답형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당초 제도 도입 취지, 기존 여객운송사업과의 관계 등을 고려하여 수요응답형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기능과 역할 등에 대한 논의가 필요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다음, 8쪽입니다.

윤준병 의원께서 대표발의한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개정안입니다.

개정안은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기간이 과태료 부과 한도 기간을 경과한 경우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운행한 경우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시·도지사가 직권으로 말소등록을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개정안은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아 자동차 사고 피해자에 대한 보상이 보장되지 않는 차량이 운행되지 않도록 하고 의무보험 미가입 차량에 대한 제재 실효성을 높이려는 것으로 그 취지는 바람직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다만 의무보험 미가입 차량에 대한 말소등록 근거를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과 자동차관리법에서 동시에 규정할 필요는 없고 자동차관리법의 등록 말소 사유에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를 추가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위원장 진선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늘 상정된 법률안과 관련해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상혁 위원님.

○박상혁 위원 의사진행발언.

○위원장 진선미 의사진행발언이요?

○박상혁 위원 예,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우리 위원장님과 양당 간사님께 말씀을 좀 드리는데요. 최근에, 지난 목요일이었지요. 4차 국가철도망 계획 공청회가 열렸습니다. 전국에서 170개 사업을 제안했고 그중에 43개 사업이 초안에 반영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말 전국 각지에 있는 많은 국민들과 단체장들 그리고 국회의원들께서 관심을 가지고 있었던 사안인데, 이게 공청회도 하루 전날 온라인으로 공지가 되었습니다. 전 국민들이 많은 관심, 수개월 수년간 관심을 가졌던 사안들인 데 비해서 공청회가 열리는 과정은 하루 전날 공지가 되었고 그리고 여기에 투입되는 예산도 제가 알기로는 신규 예산만 수십조에 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와 관련되어서 우리 소관 상임위원회인 국토교통위원회는 지금까지 이 안이 어떻게 논의가 되었고 어떻게 해서 초안이 나왔고 앞으로 어떻게 갈지에 대해서 전혀 보고받은 바가 없습니다.

지금 전북이라든지 또 충북이라든지 이런 지역에서도 이 KTX가 제대로 직행하지 않는 문제 또 도심을 지나지 않는 문제로 인해서 굉장히 많은 민원과 갈등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제가 있는 김포를 비롯한 서부 지역 같은 경우는 ‘우리 지역을 버렸다’ 이런 국민들의 비난과 원망이 아주 하늘을 찌르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양당 간사님과 위원장님이 상의를 하셔서 가지고 별도의 현안보고를 통해서 국가철도망 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받으실 것을 지금 제안드리고 협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특히 국토부뿐만 아니라, 이 관련되어서 핵심적인 것은 저는 국토부가 아니라 기재부라고 생각합니다.

기재부가 일설에는 거기 담당, 실무하는 사람 몇 사람에 의해서…… 전 국민들이 요청하고 있고 특히 철도 문제 같은 경우는 탄소 중립화 문제로 인해서 각종 필요성들이 더해지고 있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제대로 된 논의라든지 그에 대한 검토가 없었다 이런 얘기를 저는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별도 현안보고 자료에서는 부총리 및

예산 담당자까지 참석을 해서 왜 이런 결과가 나왔는지,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국토부 차원에서의 명확한 보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양당 간사님과 위원장님께서도 별도 현안보고를 꼭 잡아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진선미 상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진성준 위원 위원장님, 자료 요구 하나 하고 싶습니다.

○위원장 진선미 예, 진성준 위원님.

○진성준 위원 진성준입니다.

민간임대주택사업자 등록 제도가 실시되고 또 그들에 대해서 세제 혜택 등 각종 혜택이 주어짐에 따라서 이 주택임대사업자 제도가 주택 투기의 온상으로 활용되고 있지 않느냐, 그래서 집값을 잡지 못하고 있는 큰 원인 중의 하나가 아니냐라고 하는 국민의 지적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국토교통위원회는 기왕의 단기임대사업자 제도는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과 동시에 폐지한 바가 있습니다만 여전히 장기임대사업의 경우에는 이 특혜가 너무 과도하다고 하는 지적 또 그에 따라서 부동산 투기의 온상이 되고 있다라고 하는 지적이 계속되고 있어서 이 문제의 실태를 정확하게 보기 위해서 관련 자료를 국토교통부에 요구를 했습니다만 아직까지 제출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전임 장관 시절에도 제가 자료를 요구했고 장관께서는 제도 개선 사안까지를 고려해서 자료를 제출하겠다고 했습니다만 아직까지 이뤄지지 않고 있어요.

그간에 국토교통부가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서 이 문제를 조금 소홀히 했던 것 같은데 이 제라도 다시 한번 챙기셔서……

주택임대사업자의 정확한 현황조차도 저희들은 모르고 있는 거예요. 이래 가지고 정책의 설계가 제대로 가능하겠습니까?

관련 자료 요구 목록이 이미 다 전달돼 있을 테니 장관대행께서 각별하게 챙기셔서 조속한 시간 내에 작성해서 제출하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국토교통부장관직무대행 윤성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진성준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진선미 그러면 대체토론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오늘 상정된 법률안에 대해서는 대체토론까지 마치는 것을 전제로 먼저 소위원회 회부를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34항 국가시범스마트도시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제62항 토지분리형 분양주택 공급촉진을 위한 특별조치법안 및 제65항 한국국토정보공사법안 등 3건의 제정법률안은 공청회 실시를 위해 전체회의에 계류하고 그 외 76건의 일부개정법률안을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오늘 상정된 법률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먼저 홍기원 위원님 하시고 정정순 위원님 하시고 이현승 간사님 그리고 박상혁 위원님 순서대로 하겠습니다.

홍기원 위원님.

○홍기원 위원 감사합니다.

차관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오늘 상정된 법안 44번,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인데요. 요지는 그겁니다. 지분 쪼개기 형태로 매매되는, 그러니까 공유지분에 의한 그런 토지 거래에 대해서 일정한 요건에 해당되면 시·군·구청장의 허가를 받도록 그렇게 하는 내용인데요.

그 취지는…… 이번에 LH 사태 때도 나왔지만 그 전부터 기획부동산 업체들이 맹지나 또는 개발 가치가 없는 토지들을 사서 다단계 판매 형태를 통해 많은 서민들한테 피해를 주고 있잖아요. 그것을 방지하고자 입법 발의한 건데 수석전문위원이 검토한 결과를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토지에 대한 공유지분 거래와 불확실한 개발 정보의 생산·유포라는 행위 간에는 상관관계가 있을지 모르나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제한을 하는 것은 과잉 규제 소지가 있고 사적 자치의 원칙을 훼손할 우려가 있다 이렇게 검토를 했는데, 또 사실 시행령에 그 세부요건을 정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시행령을 아직 정하지도 않았는데 제도 운영 과정에서 문제가 많을 것 같다 또 허가 기준을 규정함에 있어서 기존의 토지 거래 허가제 허가 기준 규정들을 준용했는데 별도로 해야 되는 것 아니냐, 별도로 규정을 마련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검토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차관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국토교통부장관직무대행 윤성원 투기 수요 억제라는 측면에서는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입법안의 취지에 전적으로 저는 공감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지분 거래 내역을 한번 봤더니만 우리나라 1년간 거래되는 전체 토지 거래의 30% 이상이 지분 거래인데 이 지분 거래 사항에 대해서 공무원들이 일일이 허가를 해서 하기에는 저희들의 행정력이 감당이 되겠는지 또 순수하게 투기 생각이 없는 그런 지분 거래도 일일이 와서 허가를 받아야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보면 아마 전문위원 검토의견도 취지는 바람직하지만 이게 실제로 우리 국민 개개인 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많기 때문에 좀 더 신중히 검토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홍기원 위원 그런 문제점에 대해서 저도 일정 부분은 공감해요. 그렇지만 예외 요건으로 상속이나 증여를 빼도록 했고 또 공유지분 한 필지에 대한 공유 거래의 숫자가 일정 숫자 이하일 경우에는 허가를 법 적용 예외로 하고 있고 또 하나는 현실적으로 기획부동산에 의한 피해가 엄청나게 많은데 이것에 대한 대책은 국토부에서 하나도 없어요. 이 피해가 얼마나 있는지 실태조사도 안 되어 있고 통계조사도 안 되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까지 고려한다면 당연히 반드시 어떤 제도적인 조치가 필요한데 그것에 대해서 국토부에서 아무런 대책이 없어요, 이러한 걱정하는 사항들만 얘기할 뿐이지.

그래서 제 생각에는 시행령에서 지금 차관님이 걱정하시는 그런 부분이 최소화되도록 충분히 장치를 마련할 수 있다고 봅니다.

예를 들면 한 필지에 공유지분 거래가 30건, 40건, 50건 이런 경우도 많이 있는데 그런 것은 투기 또는 다단계 판매를 통한 그런 사기 의도가 없다면 있기 힘든 그런 행위들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우려를 해소할 수 있도록 시행령에서 충분히 고려해서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너무 소극적으로만 생각하시면, 그러면 기획부동산에 의한 그런 수많은 피해는 어떻게 다 해소할 건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답을 주셔야 될 거예요.

그래서 국토부에서 법안 내용을 고치는 것에 대해서는 저도 충분히 유연성을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이게 안 된다, 안 된다면 대안을 제시하든지.

나중에라도 제가 다시 협의하겠지만 그런 부분 충분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장관직무대행 윤성원 위원님, 제가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홍기원 위원 잠시만요, 제가 시간이 없어서.

○국토교통부장관직무대행 윤성원 먼저 말씀하십시오.

○홍기원 위원 이 법안에 대해서는 국민의힘 서일준 의원님께서도 유사한 법안을 최근에 발의하셨고요. 그다음에 국토위의 박성민·하영제 의원님도 공동발의해 주셨습니다.

여야가 충분히 합의 가능한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심의할 때 이런 부분 고려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진선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정순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정정순 위원 청주 상당구 출신 정정순 위원입니다.

위원님들, 여러 심려를 끼쳐 드려서 죄송하고 감사의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국회의원에 당선된 이후에 우리나라가 수도권 인구 절반을 넘게 만든 가장 중요한 요인을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첫째는 우리 국토교통부의 국가균형발전에 대한 의지가 부족했다. 두 번째로는 기재부의 경제성 분석 위주의 예타 제도 때문에 그럴 것이다. 세 번째로는 행정안전부의 광역시 제도, 읍을 시로 승격하면서 벌어지는 다양한 도넛형 형태의 문제 이런 것들로 인해서 소위 인구의 절반이 수도권에 집중하는 일극화, 이로 인해서 수도권은 삶의 질이 떨어지고 지방은 소멸 위기에 처하는 그런 국가적 위기에 처했다 이런 강조를 누누이 말씀드렸습니다.

다행히 국토교통부의 헌법적 가치, 임무 그것은 국가의 균형발전인데 2020년 업무보고에 국가균형발전이라는 얘기는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작은 단락에 들어 있어서 20년의 업무보고의 성과가 미흡했다 반성도 하시면서 2021년도에는 그래도 이렇게 나름대로 조그마한 소제목에 들어 있던 국가균형발전이 조금 크게 들어갔던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번에 4차 국가철도망 계획 용역 발표를 보면서 박상혁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국회에 보고는커녕 엄청난 계획을 일방적으로 발표를 해서 모든 국민들이 울분을 토해 내는 그런 지경에 처했다.

노무현 대통령이 오죽하면 기업도시, 혁신도시를 만들고 행정중심복합도시, 수도 이전까지를 고민했고 문재인 정부에서도 국가균형발전이란 이 철학이 계속 이어진다고 하는,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주무 부처인 국토교통부는 이러한 국가의 균형발전에 대한 의지와 철학이 부족했기 때문에 4차 국가철도망 계획에서도 수도권과 비수도권…… 또 오죽하면 지방 스스로가 이제는 우리 스스로 경쟁력을 높여서 살아야 되겠다는 그런 강렬한 여망에 의해서 지금 충청권 광역 메가시티 계획을 세우고 있고, 광주·전남은 통합하겠다고 하고, 대구·경북도 통합하겠다고 하고, 부울경 메가시티의 계획을 수립해서 이렇게 뭔가 경쟁력을 높여서 살아 보겠다 하는 이러한 처절한 노력에 대해서 주무 부처인 국토교통부는 어떠한 지원을 했나 이 말이에요.

국가철도망 계획에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비중은 여전히 수도권 위주로 돼 있고, 충청권 메가시티 핵심 사업인 대전·세종·청주를 연결하는 이 도로망은 도시철도로 해야 된다 또 고속철인 충북선으로 연결하면 된다, 이러한 말도 안 되는 논리를 가지고 170만 충북도민, 85만 청주시민을 좌절에 빠뜨리는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거지요.

이것은 국토교통부의 국가균형발전에 대한 정책적 의지와 철학 없이 대한민국의 미래는 없다고 봅니다. 그런 관점에서 저는 이 국가철도망 계획이 갖는 의미는 어느 때와 다르다, 그래서 누누이 강조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진전된 것이 없어서 이것에 대해서는 박상혁 위원님 말씀대로 다시 국회에서 정식 보고받고 근본적으로 다시 한번 재조정해서 계획을 수립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장관대행께서 이것에 대한 확실한 입장을 발표해 주십시오.

○국토교통부장관직무대행 윤성원 저희들 이번 제4차 국가철도망 이 계획에 대해서 공청회에 들어갈 때 경제적인 효율성과 타당성 또 교통 편의가 얼마나 좋아지는지 또 국토의 균형발전, 이제 가지 원칙하에서 저희들은 재원 조달의 한계

의 그 속에서 최선을 다해서 뽑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데 저희들도 느끼기에는 지역균형발전과 특히 지방도시권의 광역경제권 형성을 위해서는 철도망이 가장 큰 역할을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서 여러 위원님들 주신 말씀을 제가 다시 부처로 돌아가면 그 의견을 충실히 전달을 해서 국토부가 어떻게 더 보완을 해야 될지 그것은 저희들끼리 한번 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정순 위원 반드시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위원장 진선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현승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李憲昇 위원 질의에 앞서 가지고 LH 사장님 하고 HUG 사장님 배석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진선미 예.

○李憲昇 위원 2·4 대책과 관련해 가지고 많은 전문가들이 지금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먼저, 현재 민간 주도 사업을 전제로 짜여진 재개발·재건축 법체계를 공공 주도 사업을 위해서 일일이 다 뜯어고치게 됨으로써 법체계가 혼란스러워질 것이라는 우려가 있고, 두 번째 규제 완화만으로도 정비 사업이 활성화될 수 있는 곳을 공공 주도로 할 필요성과 타당성이 부족하다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셋째로 현금 청산 규정이 지자체 자치권을 훼손하고, 규제 기준 시점을 행정부 대책 발표일을 기준으로 하고 있어서 소급입법 금지의 원칙에 위배되며 궁극적으로 국회 입법의 자율성을 침해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구체적인 문제점들은 제가 서면 질의서로 대체를 하겠습니다.

더 이상 문제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일방통행식이 되어서는 안 되며 국회에서 위헌 문제 등이 충분히 논의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다음,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도 신중히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부동산거래분석원 설치를 위한 법으로 진성준 의원안을 여당에서 정부가 협의 수정해 가지고 법안을 마련해서 4월 22일 발의되어 가지고 아직 상정되지는 않았지만 정부와 여당이 소위 직회부를 논의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동산거래분석원은 전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는 부동산 감독기구로서 개인정보 보호법의 형해화, 행정부 권한의 비대화를 초래할 것으로 우려

되기 때문에 신중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다음 LH하고 HUG 사장님 나와 계신가요?

○한국토지주택공사사장 김현준 예.

○李憲昇 위원 두 분 사장 취임을 축하드리겠습니다.

LH는 그동안 직원들의 내부 정보를 이용한 부동산 투기로 인해서 전 국민의 공분을 사고 있는 엄중한 시기에 사장님께서 중책을 맡으셨습니다.

그런데 국세청장 출신으로서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업무와는 전혀 관계가 없는 실무 분야 전문가이기 때문에 일각에서는 존폐 위기에 놓인 LH를 과연 정상화시킬 수 있을까 하는 우려의 시선이 있습니다.

이 점을 명심하시고 LH의 환골탈태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다음에 HUG 권 사장님, 그동안 HUG가 갑질 논란을 빚었던 역사를 청산하고 고품질 대국민 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특히 코로나 사태로 건설사들의 여건이 좋지 않은데 건설사 신용 등급 평가를 할 때 영업 이익과 함께 회사 규모와 실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주시기를 바라며, 건설사에 약간의 리스크가 있더라도 건설사를 지원하는 측면에서 검토해달라는 건설업계의 요청이 많으므로 업계의 요청사항을 경청해 가지고 기관 운영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차관님!

○국토교통부장관직무대행 윤성원 예, 위원님.

○李憲昇 위원 지금 LH 혁신안이 준비되고 있습니까?

○국토교통부장관직무대행 윤성원 예, 지금 관계 부처 간에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李憲昇 위원 이것을 어디서 주관을 하고 있습니까?

○국토교통부장관직무대행 윤성원 저희 국토부와 기재부가 같이하고 있습니다.

○李憲昇 위원 그런데 일각에서는 기재부에서 주도를 하기 때문에 LH 혁신안이 우리 국토부의 별 영향력이 없다 그렇게 이야기되고 있는데 국토부 입장은 어떻게습니까?

○국토교통부장관직무대행 윤성원 아닙니다. 초안을 만들고 기본 골격을 만드는 것은 국토부가 다 합니다.

○**李憲昇 위원** 그런데 LH 혁신안이 지금 현재 청와대와 여당 일부에서 회람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다른 국토위원들에게는 이 혁신안을 미리 보여 줄 수 없습니까?

○**국토교통부장관직무대행 윤성원** 아직까지 정부안이 성안이 안 됐기 때문에 저희들 안이 마련 되면 저희들 생각에는 국회 차원에서 한번 공청회도 있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도 들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위원님들께 어떤 식으로 보고를 드릴지 형식과 방법은 저희들도 한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李憲昇 위원** 제가 듣기로는 국토교통부 실무자들이 현재 LH 혁신안 수립이 기재부 총괄로 추진되고 있어 가지고 전체 내용을 제대로 본 적이 없다고 합니다.

진정으로 국민의 눈높이에 부합하는 혁신안을 마련하고자 한다면 국토교통위 위원들과 전문가들에게도 공유를 해 가지고 의견을 수렴할 필요가 있습니다.

금방 차관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진선미 위원장님, LH 혁신안과 관련해 가지고 우리 국토교통위원회 차원에서 공청회를 한번 개최해 가지고 의견을 수렴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진선미** 예, 계속 논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박상혁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박상혁 위원** 제가 건설기계관리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까 보고를 하고 수석전문위원께서 검토를 해 주셨는데요.

내용이 건설기계안전관리원의 안전관리 역할의 확대 및 위상 제고, 전문성 활용을 위한 것이고, 그래서 건설기계안전관리원을 설립하자는 취지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문제가 되고 있는 타워크레인 등 관련된 건설 관리 안전 체계를 강화하려고 하는 것인데요.

제가 발의한 이후에 노조 등에서 여러 가지 우려 사항들이 제기되어서 수차례에 걸쳐서 의원실과 국토교통부 노조와 긴밀히 협력을 해 가지고 두 가지 수정 문제를 얘기했습니다. 즉 건설기계 음주 조종에 관련된 문제 하나하고 건설기계 조종사에 관련된 청문과 관련된 당사자들과의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 냈는데요.

우리 선배·동료 위원님들께서 이 법안을 심의

하실 때 발의 이후에 이런 수정된 당사자들과 또 국토부와 여러 가지 논의했던 내용들을 함께 참고해서 법안을 잘 면밀히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차관님께 묻겠습니다.

최근에 ‘김부선’이라는 말, 영화배우 말고 들어 보셨어요?

○**국토교통부장관직무대행 윤성원** 예, 들어 봤습니다.

○**박상혁 위원** 어떻게,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국토교통부장관직무대행 윤성원** 일단 철도망 계획이 지역에서 원하시는 만큼의 충족은 안 되었다는 의미에서 아마 언론에서 붙인 이름 같습니다.

○**박상혁 위원** 언론에서 붙인 이름이 아니고요. 김포·검단 그리고 부천의 시민들과 국민들께서 붙인 이름입니다. 김포·검단에, 서부권에 한 100만 명 정도가 현재 거주하고 앞으로는 한 200만 까지도 생각하고 있는데요. 이런 시민들께서 자기 지역에 국가철도망 계획이 일부 반영됐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자조적으로, 냉소적으로 반응하는 이유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차관께서는 참여정부 당시부터 청와대에 있으면서 그 이후로 주로 주택 관리 업무를 하시면서 신도시 관련 정책을 하셨잖아요?

○**국토교통부장관직무대행 윤성원** 예, 맞습니다.

○**박상혁 위원** 제가 상임위에서 누차례 얘기했지만 1기 신도시도 마찬가지로 김포라든지 검단 그리고 운정 같은 2기 신도시, 이 신도시 주민들이 원해서 신도시 만든 것 있나요? 이 지역 주민들이 원해서 신도시 건설된 건가요? 아니지요?

○**국토교통부장관직무대행 윤성원** 예.

○**박상혁 위원** 정부와 LH가 주택 문제로 인해서 건설한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것에 따른 책임을 져야 되는 것도, 교통 문제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되는 것도 국가와 정부와 그다음에 국토부와 LH 아니겠습니까?

저는 최근에 하루에도 수백 건의 문자를 받습니다. 그 내용들을 보면 정말 구구절절한 내용이 많습니다. 새벽 4시 반에 일어나서 5시에 출근을 하고, 왕복 4시간을 출퇴근하는 우리 많은 국민들이 있습니다.

이분들이 거기에 거주하게 된 이유는 국토부에서 신도시를 만들었기 때문에, 거기 가서 내 집

마련의 꿈을 이루라고 해서 만든 것이잖아요. 그런데 그것에 대한 대책이 전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제가 PPT 하나 보여 드리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차관님께서 만드신 신도시 관련된 PPT인데요. 제가 만든 게 아닙니다. 우리 시민들이 만들어 주신 거예요.

지금 김포의 인구 증가율이 2020년 현재 전국 1위입니다. 곧 전국에서 열여덟 번째 대도시가 됩니다. 전국에서 50만이 넘어가면. 그런데 백화점 없고 큰 병원 없고 지하철도 없습니다.

그런데 뭐가 있느냐? 한강에서 유일한 통행료 받는 일산대교 있어요. 그리고 저 2량짜리 한 185명 타는 꼬마 경전철이 있습니다. 출퇴근 시간 혼잡률이 285%입니다. 저것도 교통분담금 1조 2000억 시민들로부터 걷었고 김포시에서 한 이삼천억 시 재정으로 했습니다. 국가 예산 하나도 들어간 적이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번에 국가철도망 계획에 GTX-D, 서울로 갈 수 있는 급행철도를 마련해 달라는 것은 너무 당연하고 절절한 요구인데 국토부는 공청회에서 중복된다……

아니, GTX A·B·C 중에 중복 안 되는 것 있습니까, 단 하나도?

경제성, 분명히 B/C 1.0이 넘는 것도 확인되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기타의 이유를 들고 해서 이 많은 시민들로 하여금, 분노를 달고 있거든요.

저는 차관님께 오늘 저녁에, 당장 6시 반에 저랑 같이 김포공항역에 가실 것을 제안합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현장에 가서 우리 국민들이 어떻게 고통받고 있는지를 같이 봐 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양당 간사님과 위원장님은 별도의 철도망 계획에 관한, 특히 기재부를 반드시 포함하는 현안보고를 다시 한번 거듭 촉구드리고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차관님? 오늘 저랑 같이 가실 의향 있으세요?

○국토교통부장관직무대행 윤성원 위원님, 예전에 저는 김포공항역에서 철도를 한번 탄 적이 있고요.

○박상혁 위원 그러니까 오늘 가실 의향이 있으세요?

철도국장님까지 같이해서, 국토부 관계자들이 같이 가서 이 현장을 같이 함께 확인하고 국민들의 목소리를 같이 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국토교통부장관직무대행 윤성원 위원님, 오늘은 제가 일정이 있어서 위원님하고 제가 새로 날을 잡든지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상혁 위원 예.

반드시 일정을 잡아서 어떻게 국민들이 지금…… 제가 하나 아까 보여 드렸지만……

○국토교통부장관직무대행 윤성원 예, 봤습니다.

○박상혁 위원 어떤 모습으로 출퇴근하는지, 국토부에서 만든 신도시 정책의 결과가 뭔지를 한번 같이 확인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시청각자료는 전자회의록에 게재함)

○국토교통부장관직무대행 윤성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위원장 진선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성민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박성민 위원 LH 사장님, 좀 보십시오.

사장님!

○위원장 진선미 다시 나가셨나 봅니다.

○박성민 위원 예.

차관님께서 조금 전에 LH 혁신안, 혁신 방안이 아직 성안이 안 되셨다고 하는데 LH 사장님, 맞습니까?

○한국토지주택공사사장 김현준 LH 사장입니다.

○박성민 위원 아직 성안이 안 됐습니까, LH 혁신안?

○한국토지주택공사사장 김현준 지금 기재부와 국토교통부에서 혁신 방안을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도 자체적으로 혁신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박성민 위원 취임을 언제 하셨지요?

○한국토지주택공사사장 김현준 4월 23일 날 임명됐습니다.

○박성민 위원 취임식은 했습니까?

○한국토지주택공사사장 김현준 예, 어제 취임식 했습니다.

○박성민 위원 처음 뵙는데 좋은 말씀을 못 드려서 죄송합니다마는 LH가 지금 워낙 위중하고

온 국민들이 LH를 보고 있는데 정말 노심초사, 조심해야 될 시점이고 여러 가지 고민이 많으실 텐데도 불구하고 LH 혁신 방안에 대해서 이게 이미 다 유출이 되고 어제는 일부 언론에 보도까지도 났습니다.

알고 있습니까?

○**한국토지주택공사사장 김현준** 언론에 일부 조직 기능 조정 방안에 대해서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성민 위원** 주거복지 관련 때서 국가주거복지공단으로 만들고 또 산업단지 개발, 리츠 해외 사업 등에 대한 권한은 폐지·축소해서 민간이나 지방자치단체에 이양하고 그 내용이, 지금 LH 혁신 방안 이 보고서가 이미……

차관님은 성안이 안 되었다고 하는데 이게 어떻게 밖에 다 새 나왔습니까?

○**국토교통부장관직무대행 윤성원** 그것도 저희들은 잘 알 수가 없습니다.

○**박성민 위원** 그런데 어떻게 보도가 되었습니까?

○**국토교통부장관직무대행 윤성원** 그래서 저희들 국토부 내에는 제가 다 점검을 해 봤는데 저희들은 자료 유출한 사람이 없고 그래서 저도 좀……

○**박성민 위원** 담당 기자하고 제가 직접 통화를 했는데 이 문구를 가지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장관직무대행 윤성원** 그런데 그 문구대로 지금까지 확정된 게 아무 것도 없습니다, 위원님.

○**박성민 위원** 그런데 이 문구를 담당 기자가 만든 겁니까?

○**국토교통부장관직무대행 윤성원** 그것은 제가 뭐라고 말씀은 못 드릴 것 같고요. 아마 최초에 만든 초안 같은 것을 어떻게 확보한 것 같은데 그 진위 여부에 대해서는 제가 지금 뭐라고 말씀드리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박성민 위원** LH 사장님, 신도시 개발 조직을 그대로 남겨 두기로 했습니까? 계속 사업이 진행돼야 되기 때문에 그 조직은 계속 그대로 있어야 된다 이런 방안을 가지고 있습니까? 솔직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한국토지주택공사사장 김현준** 저희가 혁신 방안이 지금 구체적으로 어떻게 진행되는지는 자세하게 알지 못하고요.

○**박성민 위원** 아니, 답변을 좀……

○**한국토지주택공사사장 김현준** 다만 제가 말씀드릴 것은 LH 본연의 업무, 그러니까 주택 공급이나 토지 조성, 위원님 말씀하신 신도시 건설, 이런 기능들은 LH 본연의 업무로서 LH가 수행하는 것이 맞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박성민 위원** 택지 및 토지 조사 기능을 한국부동산원으로 이관하는 방안도 검토는 했지만 그게 다시 원위치돼서 관련 기능을 축소할 경우에는 사업 추진에 차질이 있다, 그래서 LH에 그대로 두기로 했다, 이게 LH에서 나온 이야기인데 맞습니까?

○**한국토지주택공사사장 김현준** 그 부분은 제가 정확하게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박성민 위원** 그래서 국회를 비롯한 여러 곳에서 지금 굉장히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LH에서 강도 높은 혁신 방안을 내놓아야 지금 다시 그 조직을 그대로 남겨 두고 다시 또 계속 사업을 추진해야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 이렇게 그냥 넘어가려고 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한국토지주택공사사장 김현준** 예, 위원님 말씀을 유념해서 LH 자체적으로도 직원들의 이러한 투기 행위나 이런 것들이 근절될 수 있도록 내부 통제를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성민 위원** 차관님도 잘 한번 보십시오. 이게 혁신안이 유출된 건 맞습니다, 자체적으로 누가 생산한 건 아니고, 제가 직접 다시 말씀드립니다마는 그 기자하고 직접 통화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관리도 좀 철저하게 해 주십시오.

○**국토교통부장관직무대행 윤성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박성민 위원** 예.

○**위원장 진선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상정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심상정 위원** LH 사장님 어디 계시지요? 잠깐……

얼마 전에 감사원이 2019년에 LH에 5명의 부정 입사자가 있다는 사실을 밝혔지요? 알고 계시지요?

○**한국토지주택공사사장 김현준** 예, 감사원에서 발표했습니다.

○**심상정 위원** 그런데 사실상 LH가 거의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어요. 일부 인원에 대해서

만 강등이나 정직 같은 비교적 가벼운 징계를 했고 아무런 조치를 안 받은 채용 비리 연루자들도 있었던 말이에요. 심지어는 친동생을 인사 청탁해 가지고 채용하게 한 그런 부장급 인사도 있습니다. 기가 막힐 노릇이에요.

사안의 심각성이 이런 정도인데 정부는 그동안 팔짱만 끼고 LH를 방관했습니다. 공기업 채용 비리를 이렇게 정부가 방관하니까 사기업들에게 공정을 이야기할 자격이 없어지는 거지요. 저는 이것 국토교통부에 큰 책임이 있다고 보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윤 차관님은?

○국토교통부장관직무대행 윤성원 위원님 말씀 유념하겠습니다.

○심상정 위원 그러니까 LH는 정부의 공기업 인사운영에 관한 지침을 위반한 거예요. 그렇다면 정부가, 특히 국토부가 지침 위반에 대해서 엄중히 책임을 물어야 마땅하지 않습니까?

지금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십니까?

○국토교통부장관직무대행 윤성원 구체적인 내용을 파악해서 거기에 합당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상정 위원 아니, 이게 얼마나 보도가 됐는데 아직 파악도 못 하셨다는 거예요?

○국토교통부장관직무대행 윤성원 위원님, 제가 보고는 다 받았습니다.

○심상정 위원 그래서 정부 지침 위반이기 때문에 LH 채용 비리 관련자들에 대한 즉각적인 채용 취소 및 중징계를 내려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직무대행,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토교통부장관직무대행 윤성원 위원님 말씀대로 한번 저희들도, 다른 법령하고 위반 행위 정도가 뭔지 그것을 제가 한번 꼼꼼이 봐서 새로 한번 위원님께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상정 위원 LH 사장님이 새로 취임하셨는데 축하 말씀 드리기가 참 어려운 상황 아닙니까?

LH 공사가 거의 비리의 백화점처럼 이렇게, 고구마 줄기 끌어내듯 이렇게 지금 여러 측면에서 비리가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LH 공사의 구조 개혁에 대해서 공사 사장으로서 확고한 의지를 가지고 혁신을 해 나가야 될 겁니다. LH 공사 위상에 대한 재정립과는 별개로 지금 국민들의 분노를 사고 있는 종합적인 비리에 대해서 확실한 쇄신책을 내놔야 된다고 봐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한국토지주택공사사장 김현준 위원님 말씀 유

념해서 LH가 청렴한 조직 또 공정하고 투명한 조직으로 재탄생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심상정 위원 LH 공사는 이미 공기업으로서 사망 선고가 내려진 상태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내부 혁신은 결국 공직 사회 전반의 혁신의 기준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또 아까 많은 분들의 지적이 있었지만 주택 정책 거버넌스 자체에 대한 근본적인 개혁이 이번 기회에 있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난 대선 때 여야를 불문하고 다 한목소리로 이야기를 했어요. 주택 정책을 중심에 놓는 부처를 신설해야 된다, 그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고 지금도 그런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택 공급 정책을 LH에 맡겨 놓을 게 아니라 도시주택부 같은 것을 신설해서 국정 운영의 중심에 주택 정책을 갖다 놔야 된다 이 말씀 드리고요.

그리고 지금 토지 투기가 가장 문제인데, 또 땅값 때문에 지금 집값이 비싸지기 때문에 토지비축은행을 별도로 신설해서, 지금 LH 내에 있습니다 마는 이것도 독립시키고 그동안에 주택을 공급하고 또 관리했던 것은 주택관리공단으로 재편하는 그런 방안을 적극적으로 정부가 검토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 보도에 따르면 거의 그대로 유지한다고 하는데요. 일단 지금 신도시도 있고 하기 때문에 주어진 역할은 해야 되겠습니다마는 내년 대선을 기점으로 해서 주택 정책에 대한 거버넌스 구조를 근본적으로 혁신할 수 있도록 국토부에서도 고민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장관직무대행 윤성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진선미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정동만 위원님 하시고……

○정동만 위원 차관님!

○국토교통부장관직무대행 윤성원 예.

○정동만 위원 공시가에 대한 중부세 논란, 지금 계속 이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국토부 입장이 지금 어떻게 됩니까?

○국토교통부장관직무대행 윤성원 작년에 저희들 실사가 많이 오르다 보니 올해 공시가격이 한 19% 정도 올랐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공시가격 6억 이하의 주택에 대해서는 재산세를 이렇게 0.05%p 다 감면을 했고요. 그래서 우리나라 전체

주택의 93%는 큰 영향은 없습니다.

○정동만 위원 그래서 정부가 평균 19% 넘게…… 지금 공동주택 공시가격을 공개하자, 전국이 지금 들썩이고 있는데 지금 의견 제출 건수, 몇 건이나 접수됐습니까?

○국토교통부장관직무대행 윤성원 지금 제가 보고받은 걸로는……

○정동만 위원 전년 대비 몇 건 늘어난 것 왜 공개를 안 하십니까?

○국토교통부장관직무대행 윤성원 지금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라고 있거든요. 심의를 거쳐서 4월 29일 날 저희들이 다 공개할 겁니다.

○정동만 위원 4월 29일 날 공개합니까?

○국토교통부장관직무대행 윤성원 예.

○정동만 위원 지난 총선 이후에 저희 당에서 주택 시장 안정화 대책으로 공시가 상한선을 뒀지 않습니까? 이렇게 다양한 입법을 했습니다.

차관님, 알고 계시지요?

○국토교통부장관직무대행 윤성원 예, 알고 있습니다.

○정동만 위원 공시가가 결국 세금으로 이어지는데 조세의 중목과 세율을 법률에 정하도록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국토교통부장관직무대행 윤성원 예.

○정동만 위원 그래서 조세법률주의와 맞지 않는 지적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국토교통부장관직무대행 윤성원 현행 부동산 가격공시법에는 공시가격은 적정가격을 반영하도록 돼 있는 거고요. 그래서 적정가격이라고 하면 통상 시장에서 거래되는 그런 시장가격을 말합니다.

그래서 법에 이미 원칙이 나와 있기 때문에 정부가 인위적으로 동결을 하든지 아니면 정부가 인위적으로 조작할 수가 없는 문제고요.

다만 공시가격이 급격히 올라 버리면 국민들의 여러 가지 부담이 늘어나기 때문에 거기에 맞추어서 세금에 대한 세율을 저희들이 조정하는 게 그게 맞는 정책이라고 생각하셔도 됩니다.

○정동만 위원 그래서 급격한 인상이 결국 국민들 세 부담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개선이 필요하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국토교통부장관직무대행 윤성원 예.

○정동만 위원 그래서 현 정부에서 지금 중부세 대상자만 2배 이상 급등했습니다. 서울 아파트 4채 가운데 1채가 중부세 대상이라고 합니다.

현 정부가 주택 정책도 실패했고, 국민들 조세

부담까지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래서 보유세 증가가 가처분소득 감소하고 전월세 시장 증가로 해서 결국 국민 부담으로 지금 이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어떻게 지금 대처를 하려고 하고 계십니까?

○국토교통부장관직무대행 윤성원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공공주택에 대한 공시가격 발표를 할 때 방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공시가격 6억 이하에 대해서는 재산세율을 저희들이 인하를 했고 동시에 건보료 부담이 늘어나지 않도록 재산 공제액도 늘리는 등 저희들 나름대로는 보완을 해 가지고 왔습니다.

그런데 세율에 대한 문제 같은 것은 국회 내에서도 지금 여러 의견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아마 관계 부처 간에도 논의할 수 있는 자리가 있을 걸로 그렇게 저는 예상하고 있습니다.

○정동만 위원 예.

또 한 가지는 공시가 공개에 있어서 시급히 개선해야 될 부분이 바로 투명성이거든요.

그러면 29일 날 공시가격 산정 기준을 하겠다는데 이때 적정가격이 공개가 됩니까?

(진선미 위원장, 이현승 간사와 사회교대)

○국토교통부장관직무대행 윤성원 예.

그래서 지금 왜 이 공시가격이 나왔는지, 인근 지역에 있는 실제로 거래된 사례는 뭔지 그리고 그 주택의 특성이 뭔지 하는 것을 상세하게 넣어서 29일 날 같이 다 저희들이 설명을 드립니다.

○정동만 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지역 현안을 한 가지만 최기주 위원장님께 좀 묻겠습니다.

현재 대도시권 교통혼잡도로 개선 계획 검토하고 계시지요?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장 최기주 예, 그렇습니다.

○정동만 위원 언제 계획을 확정할 예정입니까?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장 최기주 저희가 지금 4차 혼잡도로 계획을 검토하고 있고요. 이번주에 시행 계획을 목요일 날 공청회를 한 다음에 추후에 조만간 6월 안에는 마무리를 하려고……

○정동만 위원 거기 부산의 동부산 관광단지 교통체증 알고 계시지요? 그렇지요?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장 최기주 예, 한두 번 들었고 또 방문도 한번 해 봤습니다.

○정동만 위원 지금 거주지가 아닌 관광지역서

주말 교통량이 엄청나게 거기에 체증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은 잘 알고 계시지요?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장 최기주 예.

○정동만 위원 이것 뭐 완전히 송정에서 해운대 가는 도로가 교통 체증으로 인해서 주차장입니다, 주말 되면. 이것을 수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반영 안 하십니까?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장 최기주 지금 현재는 어쨌든 큰 지침이 주중 수요를 바탕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위원님 말씀 주신 것처럼 향후 피크 수요를, 점차 여가도 증가하고 이래서 주말 교통 수요를 반영해서 전체 경제성 이런 부분을 도출해 내는 그런 과정으로도 신중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정동만 위원 위원장님, 1분만 더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위원장대리 李憲昇 예, 조금만 더 주시지요.

○정동만 위원 지금 동부산 관광단지 연간 방문객이 1000만 명입니다. 이 일대 교통혼잡 해소를 위해서 반송터널을 부산시에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주말 수요 포함해서 검토를 해야 됩니다.

(이현승 간사, 진선미 위원장과 사회교대)

8월 달 되면 롯데월드 부산이 개장합니다. 개장되면 방문객 수가 150만 명 정도 될 거라고 현재 전망하고 있습니다.

관광 수요 당연히 반영해야 되겠지요, 위원장님?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장 최기주 예, 그렇습니다.

○정동만 위원 지금 정부가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앞서 말한 관광지가 문을 열면 해안로, 관광지가 더욱 혼잡해집니다. 지금도 그 주변은 주차장입니다.

어떻든 간에 이번에 반송터널, 예고된 교통지옥 해소하는 데 협조를 좀 해 주십시오.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장 최기주 예, 검토하겠습니다.

○정동만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진선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석준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송석준 위원 윤성원 차관님, 이제 법안소위에

서 구체적인 논의를 하겠지만 오늘 상정된 법안 중의 일부 내용들이 공공의 역할을 강조하고 토지 소유자들의 요건을, 토지 소유자들의 권한을 좀 침해하는 듯한 그런 내용들이 들어가 있어요.

이 부분 알고 계시지요?

○국토교통부장관직무대행 윤성원 예.

그런데 위원님……

○송석준 위원 이번의 LH 사태가 상징하는 바가 됩니까? 공공의 실패의 전형적인 사례를 말해주는 것 아닙니까?

공공이 보다 깨끗하고 능력이 있어야 되는데 그동안 정부가 스물다섯 번의 정책을 내내 연속적으로 내놓으면서 부동산 시장을 이렇게 그야말로 최악의 상황으로 만들어 냈는데 바로 공공 부문의 실패를 다시 한번 반성하고, 특히 이 LH 사태를 통해서 무능할뿐더러 더 깨끗하지 못하고 더 투명하지 못하고 그래서 그게 범죄로까지 이어질 수도 있다는 것이 지금 우리 공공 부문의 현실인데 이 부분에 대한 근본적인 반성이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국토교통부장관직무대행 윤성원 위원님, 이 사업은, 지금 상정된 법안들은 그 주민들이 원하지 않으면 사업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송석준 위원 그것은 법안소위 때 다시 얘기하고.

LH 신임 사장님, 잠깐 나오실까요?

이번에 새로 LH 사장 임명되신 것을 축하드립니다.

본인이 왜 이 자리에 오셨다고 생각하세요?

○한국토지주택공사사장 김현준 제가 국세청장으로 근무하면서 규모가 큰 조직을 운영한 경험이 있고, 그다음에 국세행정 개혁이나 세정 쇄신을 위해서 그런 노력을 한 것이……

지금 현재 LH나 국가적으로도 부동산 정책이 여러 가지 위기 상황에 있습니다. 이런 것을 제가 경험을 토대로 해서……

○송석준 위원 해결해 낼 수 있는 책임자다 이렇게 생각하시나요?

○한국토지주택공사사장 김현준 예.

○송석준 위원 그러면 지금 김 신임 사장님께서 문제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깊이 관여를 해 오셨다는 거지요?

○한국토지주택공사사장 김현준 제가 국세청장으로 재직하면서 부동산 관련된 대책회의에 참석

도 하고 또 국토부와……

○송석준 위원 적극적인 의견도 개진하셨고?

○한국토지주택공사사장 김현준 예, 국세청과도 같이 협업해서 일도 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송석준 위원 그러면 지난 7·10 대책의 핵심 내용에 대해서 많이 관여하시고 적극적으로 제안을 하셨겠네요?

○한국토지주택공사사장 김현준 저희 측면에서는 국세청에서 부동산 투기와 관련해서 해야 될 이런 업무들에 대해서 했습니다.

○송석준 위원 김 신임 사장님, 지금 결과적으로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당초 계획했던 대로 확실하게 성과를 내고 성공하고 있다 이렇게 보고 계시나요, 아니면 문제가 있으니 개선의 여지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지 말씀해 주 보세요.

○한국토지주택공사사장 김현준 정부의 주택 공급 정책을, 저희 LH에서는 그것이 신속하게 추진돼서 무주택 서민들한테 공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송석준 위원 그러니까 지금 평가 여부는 국민들이 잘 하시고 이미 많은 여당 위원님들께서도 지적해 주셨으니까……

사실 지난 7·10 대책 무리수가 많이 있던 것은 알고 계시지요?

○한국토지주택공사사장 김현준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는 적절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송석준 위원 좋아요. 그러면 그건 그렇다치고, 그래도 LH 신임 사장님으로 오셨을 때는 최고의 과제는 무엇보다도 깨끗하고 능력 있게 제대로 된 국민들이 원하고 시장이 원하는 주택 공급 원활하게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한국토지주택공사사장 김현준 예, 그렇습니다.

○송석준 위원 그렇지요.

그런데 지금 많은 민간 업계, 그러니까 거듭 말씀드리지만 주택 공급은 공공 부문이 할 수 있는 것은 공공 부문이 적극적으로 챙기고 또 공공 부문이 할 수 없거나 또는 공공 부문보다 민간이 보다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은 맡겨야 되지 않겠습니까?

○한국토지주택공사사장 김현준 예, 그렇습니다.

○송석준 위원 그렇지요. 조세 정책을 총괄해 오셨으니까 아시겠지만 민간 부문에서 주택 공급을 하는 분들은 또 이런 기업들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기업들이 보다 주택을 원활하게 좀 더 싼 가격에 공급하기 위해서는 일부 규제 완화도 필요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사실 조세 측면에서의 유인책도 좀 줘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한국토지주택공사사장 김현준 기본적으로 공공이 할 수 있는 역할과 민간이 할 수 있는 역할이 있다고 생각하고 양자가 병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그에 대한 인센티브나 여러 가지 조치들은 또 관련 부처에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송석준 위원 적극적인 검토 부탁드립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사장 김현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석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진선미 수고하셨습니다.

김희국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金熙國 위원 김현준 LH 사장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LH라는 조직은 과거 택지 개발과 주택·건설을 담당하던 토지공사와 주택공사가 합병된 기관인 것은 알고 계시지요?

○한국토지주택공사사장 김현준 예, 알고 있습니다.

○金熙國 위원 당초의 임무가 택지 개발과 주택 개발에서 신도시 개발을 거쳐서 임대주택 건설과 나아가 임대주택 운영까지 확장이 돼서 조직의 규모가 아웃 오브 컨트롤이 될 지경으로 비대해졌다는 사실을 알고 계시지요?

○한국토지주택공사사장 김현준 두 기관이 합쳐져서 시너지 효과를 발휘하는 장점도 있고 또 최근에……

○金熙國 위원 업무보고 받을 때 LH의 부채가 얼마라고 받았습니까?

○한국토지주택공사사장 김현준 LH 부채가 현재 130조 정도……

○金熙國 위원 130조의 부채가 발생한 가장 중요한 원인은 뭐라고 보고받았습니까?

○한국토지주택공사사장 김현준 정확하게 제가 세부적으로 말씀은 못 드리지만 아마 정부의 공공 정책이나 이런 것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金熙國 위원 공공임대주택 건설과 운영 때문에 주요인이, 부채 발생입니다.

지금 정부는 임대주택시장을 두고 공공임대주

택을 공급할 것이냐 민간임대주택을 공급할 것이냐 논란이 벌어지고 있는데 신임 사장께서는 임대주택 공급 주체가 민간이 우선돼야 된다고 생각합니까, 공공이 우선돼야 된다고 생각합니까?

○한국토지주택공사사장 김현준 기본적으로 임대주택은 저소득층에 대한 국가의……

○金熙國 위원 질문에 답변만 하세요, 설명을 하지 말고. 민간이 위주가 돼야 되는지 공공이 위주가 돼야 되는지, 두 가지 중에 하나를 물었잖아요.

○한국토지주택공사사장 김현준 공공이 주도가 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金熙國 위원 현재 민간임대주택과 공공임대주택의 비율이 각각 어느 정도 되는 걸로 알고 계십니까?

○한국토지주택공사사장 김현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정확히 파악하고 있지 않습니다.

○金熙國 위원 국세청에서 조사 업무를 담당하셨지요?

○한국토지주택공사사장 김현준 예, 그렇습니다.

○金熙國 위원 얼마 전 언론에 부동산 투기에 대한 단속을 하겠다고 보도가 됐는데 본인이 직접 이야기하신 겁니까?

○한국토지주택공사사장 김현준 제가 그렇게 애기한 적은 없습니다.

○金熙國 위원 국세청에서 업무를 담당할 때 우리나라의 부동산 투기꾼은 몇 명 정도로 추산하고 있었습니까?

○한국토지주택공사사장 김현준 국세청에서 그런 숫자를 관리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金熙國 위원 국세청에서 파악하고 있는 부동산 투기 자금 규모는 어느 정도 되는 걸로 추산했습니까?

○한국토지주택공사사장 김현준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자세히 알지 못합니다.

○金熙國 위원 지금 정부는 집값 상승의 원인을 공급 부족이 아니고 유동성 과잉과 투기꾼의 농간이라고 계속해서 주장을 하고 있는데, 국세청이 지난 4년간 투기꾼 단속을 몇 건 정도 했습니까?

○한국토지주택공사사장 김현준 제가 정확한 숫자는 모르지만 아무튼 부동산 투기로 인해서 주택 시장이……

○金熙國 위원 투기꾼의 숫자는 어느 정도로 알

고 있습니까?

○한국토지주택공사사장 김현준 제가 정확히는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金熙國 위원 투기꾼의 숫자도 모르고 투기꾼의 자금 규모도 모르고 투기 단속 실적도 모르면서 부동산 상승 원인이 투기꾼이라고 주장하는 근거는 무엇입니까?

○한국토지주택공사사장 김현준 부동산 거래가 많이 되면 될수록 그 과정에서 세금을 탈루하는 이런 행위가 많이 나타나기 때문에……

○金熙國 위원 세금 탈루가 부동산 투기입니까?

국세청에서는 투기와 투자의 한계선 구분을 어떻게 판정하고 계시나요?

○한국토지주택공사사장 김현준 기본적으로 부동산 투기 과정에서 세금을 안 내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金熙國 위원 세금을 안 내면 부동산 투기입니까?

○한국토지주택공사사장 김현준 실수로 목적이 아닌 어떤 다른 목적으로,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 투기로 알고 있습니다.

○金熙國 위원 그러면 현행법상 자기가 실수요가 아니고 주택을 구입해서 이익을 얻게 되면 투기로 규정합니까, 사장님?

○한국토지주택공사사장 김현준 여러 가지 상황을 감안해서 결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金熙國 위원 우리나라 현행법상 투기의 정의와 거기에 대한 처벌 규정이 있습니까?

○한국토지주택공사사장 김현준 투기에 대해서 법에서 구체적으로 규정한 내용은 제가 정확히 알지는 못합니다.

○金熙國 위원 죄형법정주의에 의거해서 투기에 대한 법적 규정과 처벌 규정이 없는데도 처벌이 가능합니까?

○한국토지주택공사사장 김현준 저희가 부동산 투기로 처벌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부동산 거래나 투기 과정에서 관련 법을 위반하는 이런 행위에 대해서 처벌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金熙國 위원 그러면 투기냐 아니냐의 구분이 리걸이나 일리걸이나의 기준으로 한다는 말씀이지요?

○한국토지주택공사사장 김현준 그런 경우에 법적인 조치를 취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金熙國 위원 다음에 다시 똑같은 질문을 할테니까 답변 준비를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진선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은혜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김은혜 위원 윤성원 차관님!

○국토교통부장관직무대행 윤성원 예, 위원님.

○김은혜 위원 4월 29일 공개한다는 공시가격에 대해서 산정 기준 발표를 하시면 이에 따른 앞으로의 공시가격 산정 방식에 대한 변화도 있으신가요, 아니면 그대로인가요?

○국토교통부장관직무대행 윤성원 작년에는 저희들 세종시에서만 시범적으로 했었고 이번에는 전국적으로 산정 근거를 같이 밝힙니다. 그리고 다시 또 6월 말까지 의견을 듣습니다.

○김은혜 위원 그러면 공시가격 산정 방식을 바꾸고 앞으로 더 세세한 기준을 공개하실 용의가 있으십니까?

○국토교통부장관직무대행 윤성원 예.

그래서 4월 29일 날은 집에 대해서는 다 공개가 됩니다.

○김은혜 위원 아, 변화는 아니고요?

보유세에 대한, 부동산세 세제에 대해서 정부 방침은 지금 수정하시겠다는 겁니까, 아니면 그대로 가시는 겁니까?

○국토교통부장관직무대행 윤성원 아직까지 거기에 대해서는 확정된 바 없습니다.

○김은혜 위원 확정된 바 없다면 논의를 하신다는 말씀이신가요?

○국토교통부장관직무대행 윤성원 여러 계기가 되면 아마 논의가 있을 걸로 봅니다마는 저희들은 공시가격 6억 이하에 대해서는 세금 감면을 했기 때문에 우리나라 전체 주택의 93% 정도면 저는 중저가 주택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최대한 배려를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은혜 위원 0.05%p 인하하신 것은 아는데요. 그게 시뮬레이션 돌려 보면 내년부터는 재산세가 다시 다 올라갑니다. 그래서 1년 꿈수 인하처럼 국민에게 느껴지는 게 맞고요.

차관님, 우리나라 부동산세가 OECD 몇 위인지 아세요?

○국토교통부장관직무대행 윤성원 저희들 보유세 기준으로 OECD 평균보다는 낮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은혜 위원 예, 보유세 기준으로 0.9%이지요. OECD 평균이 1.0이니까요.

○국토교통부장관직무대행 윤성원 맞습니다, 위

원님.

○김은혜 위원 낮은 것은 맞는데 평균 이상을 넘어가는 보유세 말고 다른 부동산세 합하면 3위 정도 됩니다. 국민들의 재산에 세금을 부과하는 것은 맞지만 이 낮은 기준에 무조건 맞추지 않으면 투기꾼으로 인식하는 정부의 기조가 저는 문제였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아까 종부세나 재산세 말씀하실 때 93%, 96% 말씀하시는데 종부세라는 그 기준, 인구의 3% 그 모수가 얼마입니까? 종부세가 1%다, 2%다 할 때 분모가 뭐예요?

○국토교통부장관직무대행 윤성원 우리나라 전체 국민 수에 비교해서 종부세를 내는 사람이 어느 정도인가 하는 겁니다.

○김은혜 위원 그러면 갓난아이도 종부세를 걱정해야 됩니까?

○국토교통부장관직무대행 윤성원 그런데 갓난아이지만 고가의 그런 주택을 보유하고 있고 또 시세가 많이 올랐다면 거기에 합당한 세 부담을 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김은혜 위원 예, 그렇지만 그런 모수가…… 경제활동인구가 집중된 대도시라든지 그 모수를 합리적으로 바꾸셔야지요. 한 살, 두 살까지 포함해서 종부세는 3%다, 4%다 말씀하시는 것은 저는 역지로 기준을 끼워 맞추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 기준에 대해서 변경 가능성도 나중에 알려주시기를 바라고요. 왜냐하면 임대주택분들도 재산세 내고 있는 것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차관님?

○국토교통부장관직무대행 윤성원 예, 맞습니다.

○김은혜 위원 지금 공시가격의 급격한 인상으로 인해서 정부로부터 보호받고자 하는 주거환경이 취약한 서민들까지도 타격을 받고 있다는 게 부동산에 대한 국민 분노를 반영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저는 공시가격 이야기를 하실 때 또 종부세를 이야기하실 때 그 수치, 분모나 기준은 정확하게 하셨으면 좋겠다 생각하고요.

그 공시가격 산정 기준과 그리고 부동산 세제의 변화 가능성 그리고 또한 임대주택 서민들까지 종부세를 내야 되는 그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개선을 했으면 좋겠다는 방안을 저희 위원실에 따로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면 찾아와서 보고를 해 주셔도 감사하겠고요.

○국토교통부장관직무대행 윤성원 위원님, 제가 찾아 뵙고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은혜 위원 감사합니다.

김현준 LH 사장님 계신가요?

○한국토지주택공사사장 김현준 예.

○김은혜 위원 사장님, 저희가 10년 공공임대아파트·임대주택에 들어가 있는 LH 직원들의 명단을 부탁드렸습니다. 그런데 그게 다주택자인지 아니면 1주택자인지 분명치가 않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조사를 추가로 하셔서 저희 위원실에 자료를 제출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한국토지주택공사사장 김현준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은혜 위원 다음 주까지 좀 부탁드립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사장 김현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은혜 위원 고맙습니다.

○위원장 진선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하영제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하영제 위원 차관님!

○국토교통부장관직무대행 윤성원 예, 위원님.

○하영제 위원 지금 2020년도 3분기 공인중개사 자격을 보유한 수가 한 46만 6000명 정도로 통계가 나오는데 이 중에서 개업 공인중개사로 등록해서 영업 행위를 하고 있는 퍼센트는 몇 퍼센트로 지금 기억을 하고 있습니까?

○국토교통부장관직무대행 윤성원 위원님, 많은 부분들이 그냥 장롱 먼허로 알고 있습니다.

○하영제 위원 왜 그렇다고 생각하지요?

○국토교통부장관직무대행 윤성원 중개 시장에서 워낙 경쟁이 치열한 측면도 있는 것 같고 또 거래 물건 따라서는 수익성이 워낙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그런 편차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하영제 위원 어떻게 제도 개선해 나갈 생각입니까?

○국토교통부장관직무대행 윤성원 일단은 저희들이 중개 시장에 대해서 부동산 종합 서비스를 할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경쟁력 강화 방안이 있는 건지, 그래서 업계 자체의 능력부터 우선 저희들이 제고하는 그런 방향으로……

○하영제 위원 아니, 그것도 있겠지만 이게 지금 절대평가를 하다 보니까…… 그렇잖아요? 40점 이하 60점 사이 뽑고 있는데 이 상태를 계속할 것인가 아니면…… 몇 년 전에 상대평가를 해본 기록이 있지요, 몇 년 전에?

○국토교통부장관직무대행 윤성원 예, 과거에 한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영제 위원 그러면 지금 향간의 이야기를 잘 들어서 알고 계시겠지만 학원 좋은 일 다 시킨다 이겁니다, 학원. 알고 계십니까?

○국토교통부장관직무대행 윤성원 예, 그런 면도 저희들 들었습니다.

○하영제 위원 그런데 그것을 알고 계신다면 뭔가 지금 정도는 부동산 관련해 가지고 이제……

보세요, 최근 15년간 공인중개사 자격시험 합격률. 최저 합격률은 13.2%, 가장 높은 것이 36.6% 정도 되면서 자격증 보유자 개업률이 23%밖에 안 되고, 전부 학원 다니면서 비싼 수업료 내 가지고 자격증 따 가지고 장롱 속에 넣어 놓고 있는데 왜 국토교통부는 이번 기회에 부동산 이렇게 관련돼 가지고, 저번에 물었을 때 ‘종합적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하는데……

본 위원이…… 이번에 국토법률소위에 상정됩니다마는 거기에 국토교통부 의견이라고 하는 것이 나와 있어요.

여기 지금 검토보고서에 보니까 상당히 회피성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국토교통부장관이 매 시험의 선발 예정 인원을 결정할 경우 중개업계·수험생·소비자 등 집단 이해관계 조정에 상당한 사회적 비용이 발생한다”, 당연히 국토교통부가 이것을 해야지요. 사회적 비용이 발생하면 안 하겠다는 겁니까?

두 번째, “공인중개사 시험의 합격자 선발 방식은 공인중개사에게 요구되는 전문적 능력, 사회적 수요와 공급, 기타 여러 사회·경제적인 여건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결정할 필요가 있다”, 이것 참 상당히 두루뭉술한 이야기를 한 모양인데……

차관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토교통부장관직무대행 윤성원 위원님, 지금 자격증 보유자 가운데 실제 중개업무를 하고 계시는 분이 40만 명 가운데 한 10만 명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의 취지는 이해를 합니다마는 합격생을 뽑는 방식을 정부가 인위적으로 바꿔서 시장에 못 들어오게 칸막이를 치는 그것보다는 저희들은 좀 더 업계 내에서 여러 가지 수익성이 나오는 그런 일자리가 되면 오히려 지금보다는……

○하영제 위원 잠깐만요, 제가 시간 때문에 그런데.

90년도, 91년도, 93년도, 95년도, 97년도에 상대 평가를 한 이유는 뭐지요?

○국토교통부장관직무대행 윤성원 그때는 정부가 좀 수급 조절을 한 것 같습니다.

○하영제 위원 그런데 왜 지금은 안 합니까?

○국토교통부장관직무대행 윤성원 과거에 그렇게 할 때와 지금은 시장 상황이 바뀌었습니다.

○하영제 위원 어떻게 달라졌지요, 시장 상황이?

○국토교통부장관직무대행 윤성원 그때는 아무래도 관이 우위에 있었던 그런 시기 같으면……

○하영제 위원 관이 우위가 아니고, 지금 오히려 부동산 업계가 혼란스러운데 이것도 지금 공인중개사분들한테 책임이 없다는 것이 아니라 제도상으로 너무 양산을 많이 했나 싶은 생각이 든단 말입니다, 바닥 전체가.

○국토교통부장관직무대행 윤성원 예, 그런 면도 있습니다.

○하영제 위원 그것을 좀 개선해 볼 생각을 안하시고 왜 자꾸 사회적 비용이 많이 드니 이런 뻔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까?

○국토교통부장관직무대행 윤성원 그런데 중개업을 보고 또 여기에 들어오고자 하는……

○하영제 위원 까딱하면 중개사분들이 오해를 받을 수 있어요. 양산만 많이 해 가지고 본인들이 까딱하면 부동산 시장을 혼란시키지 않았는가, 굉장한 오해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장롱에 넣어 놓고 안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을 좀 정리해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듣고 계신 겁니까?

○국토교통부장관직무대행 윤성원 위원님, 저희도 같이 한번 논의……

○하영제 위원 좀 정리를 해 가지고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갖고 계신 분들이 오해받을 수 있는 기회를 없애고 그야말로 학원에만 비싼 수업료 갖다 바치는 이것을 국가가 좀 정리할 때가 오지 않았습니까?

상대평가한 기억이 90년도부터 97년까지 있는데……

○국토교통부장관직무대행 윤성원 예, 있습니다.

○하영제 위원 지금은 왜 안 하느냐 이겁니다.

그때 관 우위가 어떻니 이걸 아니잖아요. 관이

우위해서 시험을 치는 겁니까? 실력 있는 분들이 합격하면 되는데.

○국토교통부장관직무대행 윤성원 그래서 저희들은 시장 상황도 고려하는 게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데 위원님이 주신 말씀을 저희들이 감안을 해서 합당한 대안이 있는 건지……

○하영제 위원 아니, 지금 수석전문위원의 검토 보고서에 의견을 제출해 놓고서는 왜 이야기가 다른 거예요? 이런 의견 제출했으니까 여기 지금 들어 있는 것 아닙니까? 곧 국토법률소위에 상정이 될 텐데……

국토교통부 의견이 나와 있는데 굉장히…… 정부로서는 회피성 의견이 나와 있다 이겁니다, 보니까. 까딱하면 열심히 공부해서 개업을 하고 계신 우리 공인중개사분들 오해받을 수 있어요. 이렇게 가면 굉장히 난립이 돼 있고, 받아서 한 80%는 그냥 장롱 속에 집어넣는단 말이에요. 이렇게 돈 갖다 바치면서 왜 그렇게 뽑아내냐?

한번 심층 검토해 보시고 국토법률소위에서 우리 위원님들의 추가질의 있을 텐데 명확한 입장을 좀 밝혀 주시고……

○국토교통부장관직무대행 윤성원 예, 그러겠습니다.

○하영제 위원 하루빨리 이것을 좀 조정해서 많이 양산하는 제도를 줄이고……

○위원장 진선미 마무리 좀 해 주세요.

○하영제 위원 줄여 가지고 그야말로 개업할 수 있는 사람 위주로 해 주시라고요. 바닥 민심이 그렇습니다.

○국토교통부장관직무대행 윤성원 위원님, 제가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진선미 그러면 이것으로 대체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면 질의가 있습니다.

송석준 위원님, 하영제 위원님, 이현승 간사님 또 조용천 간사님도 서면 질의 있습니다.

기관장께서는 서면 답변서를 성실하게 작성해서 일주일 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면 질의와 답변서의 내용은 회의록에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진행에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 또 직원 여러분, 보좌직원 여러분, 언론인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2분 산회)

○출석 위원(29인)

강 준 현	김 교 홍	김 상 훈	김 윤 덕
김 은 혜	김 회 재	김 회 국	문 정 복
문 진 석	박 상 혁	박 성 민	박 영 순
소 병 훈	송 석 준	심 상 정	이 종 배
이 현 승	장 경 태	전 용 기	정 동 만
정 정 순	조 오 섭	조 응 천	진 선 미
진 성 준	천 준 호	하 영 제	허 영
홍 기 원			

○출석 전문위원

수 석 전 문 위 원	최 시 역
전 문 위 원	이 지 민

○정부측 및 기타 참석자

국토교통부	
장 관 직 무 대 행	윤 성 원
기 획 조 정 실 장	백 승 근
국 토 도 시 실 장	김 홍 진
주 택 토 지 실 장	김 수 상
건 설 정 책 국 장	권 혁 진
교 통 물 류 실 장	박 무 익
철 도 국 장	김 선 태
주 택 정 책 관	김 영 한
주 거 복 지 정 책 관	김 홍 목
토 지 정 책 관	김 형 석
국 토 정 보 정 책 관	남 영 우
공 항 정 책 관	주 종 완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위 원 장	최 기 주
광역교통정책국장	이 윤 상
한국토지주택공사사장	김 현 준
주택도시보증공사사장	권 형 택
한국국토정보공사사장	김 정 렬

【보고사항】

○의원 사직

의원명	선거구	교섭단체	연월일
김진애	비례대표	어느 교섭단체에도 속하지 아니하는 의원	2021. 3. 24.

○위원 개선

보임위원	교섭단체	연월일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2021. 3. 26.

소위원회	사임위원	보임위원	교섭단체	연월일
예산결산 기금심사	·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2021. 4. 26.
청원심사	·	전용기		

○교섭단체 소속의원 제적

의원명	교섭단체	사유	연월일
송언석	국민의힘	탈당	2021. 4. 14.

○의안 회부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여기구 의원 대표 발의)

(2021. 3. 18. 여기구·김민철·김승원·김병욱·박상혁·홍기원·황운하·임종성·정일영·박영순·김주영 의원 발의)

한국부동산원법 일부개정법률안(안병길 의원 대표 발의)

(2021. 3. 18. 안병길·김태호·유의동·이철규·김선교·윤창현·류성걸·권성동·정운천·이종성·정점식 의원 발의)

주택도시보증법 일부개정법률안(안병길 의원 대표 발의)

(2021. 3. 18. 안병길·김태호·유의동·이철규·김선교·윤창현·류성걸·권성동·정운천·이종성·정점식 의원 발의)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 개정법률안(안병길 의원 대표 발의)

(2021. 3. 18. 안병길·김태호·유의동·이철규·김선교·윤창현·류성걸·권성동·이종성·정점식 의원 발의)

한국토지주택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안병길 의원 대표 발의)

(2021. 3. 18. 안병길·김태호·유의동·이철규·김선교·윤창현·류성걸·권성동·정운천·이종성·정점식 의원 발의)

이상 5건 3월 19일 회부됨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하영제 의원 대표 발의)

(2021. 3. 19. 하영제·강민국·김도읍·김용환·김형동·박덕흠·박성민·서병수·서일준·윤창현·이현승·정점식 의원 발의)

토지임대부 기본주택 공급촉진을 위한 특별법안(박상혁 의원 대표 발의)

(2021. 3. 19. 박상혁·여기구·김윤덕·허영·김정호·진성준·민형배·신동근·이동주·홍기원·김성주·윤후덕 의원 발의)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박상혁 의원 대표

발의)

(2021. 3. 19. 박상혁 · 어기구 · 김윤덕 · 허영 · 김정호 · 진성준 · 임오경 · 이정문 · 민형배 · 신동근 · 이동주 · 김철민 · 홍기원 · 김성주 · 윤후덕 의원 발의)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양정숙 의원 대표발의)

(2021. 3. 19. 양정숙 · 김윤덕 · 안호영 · 김홍걸 · 서영교 · 윤준병 · 양기대 · 오영훈 · 김수홍 · 신영대 의원 발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양정숙 의원 대표발의)

(2021. 3. 19. 양정숙 · 김윤덕 · 안호영 · 김홍걸 · 서영교 · 윤준병 · 양기대 · 오영훈 · 김수홍 · 신영대 의원 발의)

도시철도법 일부개정법률안(양정숙 의원 대표발의)

(2021. 3. 19. 양정숙 · 김윤덕 · 안호영 · 김홍걸 · 서영교 · 윤준병 · 양기대 · 오영훈 · 김수홍 · 신영대 의원 발의)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양정숙 의원 대표발의)

(2021. 3. 19. 양정숙 · 김윤덕 · 안호영 · 김홍걸 · 서영교 · 윤준병 · 양기대 · 오영훈 · 김수홍 · 신영대 의원 발의)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양정숙 의원 대표발의)

(2021. 3. 19. 양정숙 · 김윤덕 · 안호영 · 김홍걸 · 서영교 · 윤준병 · 양기대 · 오영훈 · 김수홍 · 신영대 의원 발의)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정청래 의원 대표발의)

(2021. 3. 19. 정청래 · 강선우 · 김성환 · 김승원 · 김영배 · 박홍근 · 안규백 · 이용선 · 이해식 · 정태호 의원 발의)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병훈 의원 대표발의)

(2021. 3. 19. 이병훈 · 강병원 · 김상희 · 김승원 · 김철민 · 노웅래 · 민병덕 · 민형배 · 박정 · 서영교 · 오영환 · 유정주 · 윤영덕 · 이수진 · 이용빈 · 이형석 · 임오경 의원 발의)

이상 10건 3월 22일 회부됨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송언석 의원 대표발의)

(2021. 3. 22. 송언석 · 구자근 · 권명호 · 김성원 · 김용관 · 김정재 · 박덕흠 · 서병수 · 윤창현 · 임이자 · 정진석 · 정희용 · 조수진 · 태영호 · 한무경 · 허은아 의원 발의)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조오섭 의원 대표발의)

(2021. 3. 22. 조오섭 · 송갑석 · 윤영덕 · 양향자 · 이형석 · 이병훈 · 박영순 · 인재근 · 안민석 · 민형배 · 이용빈 · 문진석 의원 발의)

부동산투자회사법 일부개정법률안(김용관 의원 대표발의)

(2021. 3. 22. 김용관 · 권명호 · 박대수 · 구자근 · 정희용 · 태영호 · 배준영 · 김영식 · 이용 · 강대식 · 유정준 · 송언석 · 권영세 의원 발의)

한국도로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김용관 의원 대표발의)

(2021. 3. 22. 김용관 · 권명호 · 박대수 · 구자근 · 정희용 · 태영호 · 배준영 · 김영식 · 이용 · 강대식 · 유정준 · 권영세 의원 발의)

이상 4건 3월 23일 회부됨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송언석 의원 대표발의)

(2021. 3. 23. 송언석 · 윤창현 · 임이자 · 김성원 · 태영호 · 허은아 · 김정재 · 권명호 · 박덕흠 · 정희용 · 구자근 의원 발의)

항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송언석 의원 대표발의)

(2021. 3. 23. 송언석 · 윤창현 · 임이자 · 김성원 · 태영호 · 허은아 · 김정재 · 권명호 · 박덕흠 · 정희용 · 구자근 · 조수진 의원 발의)

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홍성국 의원 대표발의)

(2021. 3. 23. 홍성국 · 강준현 · 김경만 · 김병욱 · 김성주 · 김승원 · 김영배 · 김영주 · 김용민 · 김주영 · 노웅래 · 민병덕 · 민형배 · 박홍근 · 신정훈 · 안민석 · 양기대 · 오기형 · 유정주 · 윤건영 · 윤준병 · 이개호 · 이수진(비) · 이용빈 · 이용선 · 이용우 · 이원욱 · 이장섭 · 전용기 · 정일영 · 정필모 · 한준호 · 허종식 · 홍익표 · 홍정민 · 황운하 의원 발의)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허영 의원 대표발의)

(2021. 3. 23. 허영 · 김상희 · 김성환 · 김승원 · 김정호 · 김주영 · 맹성규 · 박상혁 · 박홍근 · 오영환 · 유정주 · 이광재 · 이규민 · 이소영 · 이용우 · 이학영 · 전용기 · 진선미 · 홍기원 의원 발의)

건축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허영 의원 대표발의)

(2021. 3. 23. 허영 · 김상희 · 김성환 · 김승원 · 김정호 · 김주영 · 맹성규 · 박상혁 · 박홍근 · 오영환 · 유정주 · 이광재 · 이규민 · 이소영 · 이용우 · 이학영 · 전용기 · 진선미 · 홍기원 의원

발의)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지방강소도시 육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안(김수홍 의원 대표발의)

(2021. 3. 23. 김수홍 · 강병원 · 고용진 · 김경만 · 김성주 · 김교홍 · 김주영 · 김진표 · 김철민 · 김홍걸 · 김희재 · 민병덕 · 박용진 · 소병훈 · 안규백 · 안호영 · 양경숙 · 양기대 · 양정숙 · 양향자 · 유동수 · 이개호 · 이용호 · 이원욱 · 정성호 · 정필모 · 한병도 의원 발의)

이상 6건 3월 24일 회부됨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예지 의원 대표발의)

(2021. 3. 25. 김예지 · 김선교 · 김희국 · 류성걸 · 서병수 · 양금희 · 이용 · 이종배 · 정희용 · 최승재 · 홍석준 의원 발의)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이현승 의원 대표발의)

(2021. 3. 25. 이현승 · 김정재 · 김도읍 · 이양수 · 조해진 · 성일중 · 이주환 · 김성원 · 서병수 · 하영제 · 김미애 · 정점식 · 추경호 · 강민국 · 임이자 의원 발의)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조정훈 의원 대표발의)

(2021. 3. 25. 조정훈 · 김민철 · 배진교 · 강은미 · 강민정 · 류호정 · 이규민 · 이수진 · 황운하 · 심상정 · 엄태영 · 이동주 · 김주영 · 최형두 · 김상훈 의원 발의)

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문진석 의원 대표발의)

(2021. 3. 25. 문진석 · 조오섭 · 송갑석 · 이정문 · 이규민 · 홍성국 · 박성민 · 김종민 · 윤재갑 · 이상민 · 김민석 · 이수진 · 이해식 · 이명수 · 어기구 의원 발의)

이상 4건 3월 26일 회부됨

공직자와 그 가족의 부동산 불법 거래 의혹 조사를 위한 특별법안(강민정 의원 대표발의)

(2021. 3. 22. 강민정 · 최강욱 · 양정숙 · 강은미 · 류호정 · 용혜인 · 허종식 · 심상정 · 황운하 · 장혜영 · 임호선 · 조정훈 의원 발의)

3월 31일 회부됨

도로공간의 입체개발에 관한 법률안(김희재 의원 대표발의)

(2021. 3. 31. 김희재 · 이상현 · 이형석 · 김주영 · 홍성국 · 박상혁 · 이용우 · 김진표 · 김수홍 · 박영순 · 백혜련 · 허영 · 이용빈 · 윤영덕 · 홍기원 · 임호선 · 김용민 · 김경만 · 이병훈 의원

발의)

4월 1일 회부됨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노웅래 의원 대표발의)

(2021. 4. 1. 노웅래 · 한준호 · 오영환 · 이원욱 · 양기대 · 김승원 · 기동민 · 홍기원 · 김영배 · 박상혁 · 진성준 의원 발의)

4월 2일 회부됨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김교홍 의원 대표발의)

(2021. 4. 1. 김교홍 · 박찬대 · 윤관석 · 박영순 · 허종식 · 소병훈 · 강훈식 · 신동근 · 송영길 · 유동수 의원 발의)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 법률안(유기홍 의원 대표발의)

(2021. 4. 2. 유기홍 · 김교홍 · 김윤덕 · 김종민 · 서동용 · 설훈 · 송재호 · 안민석 · 양경숙 · 윤미향 · 윤영덕 · 윤준병 의원 발의)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조오섭 의원 대표발의)

(2021. 4. 2. 조오섭 · 김종민 · 최강욱 · 문진석 · 심상정 · 김윤덕 · 김성주 · 홍익표 · 이장섭 · 민형배 · 양향자 · 변재일 · 도종환 · 윤영덕 · 김남국 의원 발의)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신영대 의원 대표발의)

(2021. 4. 2. 신영대 · 주철현 · 강선우 · 양정숙 · 허영 · 위성곤 · 이개호 · 이상직 · 오영훈 · 김성주 의원 발의)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박상혁 의원 대표발의)

(2021. 4. 2. 박상혁 · 어기구 · 민형배 · 김철민 · 홍기원 · 이정문 · 서영석 · 신동근 · 박정 · 진성준 · 김성주 · 김정호 의원 발의)

이상 5건 4월 5일 회부됨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승원 의원 대표발의)

(2021. 4. 5. 김승원 · 양정숙 · 이병훈 · 이상직 · 이상현 · 박상혁 · 서삼석 · 임호선 · 윤준병 · 유정주 · 박정 의원 발의)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송영길 의원 대표발의)

(2021. 4. 5. 송영길 · 김경만 · 김민석 · 김성주 · 김영호 · 박찬대 · 신동근 · 양경숙 · 이용우 · 허종식 의원 발의)

이상 2건 4월 6일 회부됨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희국 의원 대표발의)

(2021. 4. 6. 김희국 · 강기윤 · 권성동 · 최승재 · 김승수 · 김형동 · 박형수 · 추경호 · 김예지 · 조명희 의원 발의)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김희국 의원 대표 발의)

(2021. 4. 6. 김희국 · 강기윤 · 권성동 · 최승재 · 김승수 · 김형동 · 박형수 · 추경호 · 김예지 · 조명희 의원 발의)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희국 의원 대표 발의)

(2021. 4. 6. 김희국 · 강기윤 · 권성동 · 최승재 · 김승수 · 김형동 · 박형수 · 추경호 · 김예지 · 조명희 의원 발의)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송언석 의원 대표 발의)

(2021. 4. 6. 송언석 · 구자근 · 권명호 · 김성원 · 김정재 · 김형동 · 박덕흠 · 윤창현 · 임이자 · 정희용 · 조수진 · 태영호 · 허은아 의원 발의)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곽상도 의원 대표 발의)

(2021. 4. 6. 곽상도 · 정경희 · 윤재옥 · 김용판 · 박대수 · 윤한홍 · 권성동 · 송석준 · 김성원 · 추경호 · 이용 · 성일종 · 김승수 의원 발의)

이상 5건 4월 7일 회부됨

철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김교홍 의원 대표 발의)

(2021. 4. 7. 김교홍 · 김홍걸 · 박찬대 · 윤관석 · 김수홍 · 허종식 · 조웅천 · 신동근 · 송영길 · 소병훈 · 박영순 의원 발의)

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김교홍 의원 대표 발의)

(2021. 4. 7. 김교홍 · 김수홍 · 김홍걸 · 박영순 · 박찬대 · 소병훈 · 송영길 · 신동근 · 윤관석 · 조웅천 · 허종식 의원 발의)

이상 2건 4월 8일 회부됨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박상혁 의원 대표 발의)

(2021. 4. 8. 박상혁 · 어기구 · 홍기원 · 이정문 · 서영석 · 신동근 · 진성준 · 김성주 · 김정호 · 양향자 · 임오경 · 김윤덕 의원 발의)

4월 9일 회부됨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서일준 의원 대표 발의)

(2021. 4. 9. 서일준 · 김병욱 · 한무경 · 하영제 · 이종성 · 김태흠 · 홍준표 · 윤창현 · 김용판 · 박성민 · 정진석 · 양금희 의원 발의)

부동산거래감독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소병훈 의원 대표 발의)

(2021. 4. 9. 소병훈 · 김경만 · 홍정민 · 박상혁 · 조오섭 · 허영 · 강득구 · 이원택 · 이규민 · 신동근 · 서영석 · 설훈 의원 발의)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성민 의원 대표 발의)

(2021. 4. 9. 박성민 · 허은아 · 박대수 · 한무경 · 서일준 · 김영식 · 강민국 · 김정재 · 하영제 · 김석기 의원 발의)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박상혁 의원 대표 발의)

(2021. 4. 9. 박상혁 · 김정호 · 박정 · 진성준 · 신동근 · 이정문 · 김성주 · 홍기원 · 민형배 · 김철민 · 서영석 · 어기구 의원 발의)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소병훈 의원 대표 발의)

(2021. 4. 9. 소병훈 · 강득구 · 김경만 · 박상혁 · 서영석 · 설훈 · 신동근 · 윤준병 · 이규민 · 이원택 · 조오섭 · 허영 · 홍정민 의원 발의)

이상 5건 4월 12일 회부됨

한국도로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김윤덕 의원 대표 발의)

(2021. 4. 12. 김윤덕 · 강훈식 · 문진석 · 박상혁 · 박완주 · 양향자 · 윤재갑 · 이상민 · 임종성 · 한병도 의원 발의)

4월 13일 회부됨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김은혜 의원 대표 발의)

(2021. 4. 13. 김은혜 · 이종배 · 엄태영 · 류성걸 · 구자근 · 강대식 · 최춘식 · 김태호 · 송석준 · 조경태 · 정희용 · 윤창현 · 추경호 · 양금희 · 최형두 · 성일종 · 권영세 · 지성호 의원 발의)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안(김은혜 의원 대표 발의)

(2021. 4. 13. 김은혜 · 권영세 · 구자근 · 최춘식 · 지성호 · 조경태 · 송석준 · 윤창현 · 김태호 · 최형두 · 성일종 · 양금희 · 강대식 · 정희용 · 추경호 의원 발의)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오영훈 의원 대표 발의)

(2021. 4. 13. 오영훈 · 강민정 · 김병주 · 박광온 · 박완주 · 송재호 · 양정숙 · 오영환 · 유정주 · 최종윤 의원 발의)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해식 의원 대표 발의)

(2021. 4. 13. 이해식 · 강선우 · 김상희 · 김윤덕 ·

김철민 · 민형배 · 설훈 · 신정훈 · 오영환 · 이수진 · 이학영 의원 발의)

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김승남 의원 대표발의)

(2021. 4. 13. 김승남 · 송재호 · 양경숙 · 박성준 · 송갑석 · 최기상 · 최종윤 · 조오섭 · 양정숙 · 윤재갑 의원 발의)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노웅래 의원 대표발의)

(2021. 4. 13. 노웅래 · 기동민 · 김승원 · 김영배 · 박상혁 · 오영환 · 이원욱 · 진성준 · 홍기원 · 홍성국 의원 발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정호 의원 대표발의)

(2021. 4. 13. 김정호 · 김병욱 · 김윤덕 · 박상혁 · 서동용 · 신정훈 · 어기구 · 윤후덕 · 이병훈 · 임종성 · 전재수 · 정춘숙 · 허종식 의원 발의)

국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호 의원 대표발의)

(2021. 4. 13. 김정호 · 박상혁 · 어기구 · 김병욱 · 신정훈 · 김윤덕 · 윤후덕 · 허종식 · 정춘숙 · 서동용 · 이병훈 · 임종성 · 전재수 의원 발의)
이상 8건 4월 14일 회부됨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규민 의원 대표발의)

(2021. 4. 14. 이규민 · 유정주 · 김홍걸 · 이용우 · 진성준 · 안호영 · 홍기원 · 정성호 · 이수진 · 양이원영 · 김승원 · 김병욱 · 문진석 · 김남국 · 민병덕 · 최혜영 · 윤영덕 · 박영순 · 최강욱 · 임종성 · 임오경 · 최종윤 · 황운하 · 박성준 · 윤미향 의원 발의)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박대수 의원 대표발의)

(2021. 4. 14. 박대수 · 박성민 · 이종배 · 안병길 · 허은아 · 지성호 · 구자근 · 박상도 · 김희곤 · 권영세 · 윤두현 의원 발의)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문정복 의원 대표발의)

(2021. 4. 14. 문정복 · 서영석 · 김민기 · 김승원 · 한준호 · 홍정민 · 정성호 · 김주영 · 박상혁 · 설훈 · 오영환 · 이용우 · 윤호중 · 김상희 · 김용민 · 백혜련 · 윤후덕 · 임종성 · 강득구 · 김영진 · 송석준 · 고영인 · 최종윤 · 김병욱 · 전용기 · 이소영 · 이재정 · 이규민 · 정춘숙 · 심상정 · 김남국 의원 발의)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권영세 의원 대표발의)

(2021. 4. 14. 권영세 · 태영호 · 김기현 · 한무경 · 지성호 · 이명수 · 양금희 · 허은아 · 윤창현 · 박대출 의원 발의)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문정복 의원 대표발의)

(2021. 4. 14. 문정복 · 소병훈 · 강준현 · 천준호 · 박상혁 · 황운하 · 김남국 · 김교홍 · 허영 · 홍기원 · 장경태 · 최강욱 · 문진석 의원 발의)
이상 5건 4월 15일 회부됨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양기대 의원 대표발의)

(2021. 4. 15. 양기대 · 강민정 · 박정 · 김홍걸 · 김주영 · 허종식 · 오영환 · 이용빈 · 이용선 · 민형배 · 양정숙 · 홍성국 의원 발의)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소병훈 의원 대표발의)

(2021. 4. 15. 소병훈 · 서영석 · 송재호 · 인재근 · 김남국 · 임종성 · 김영진 · 이성만 · 문정복 · 오영환 의원 발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소병훈 의원 대표발의)

(2021. 4. 15. 소병훈 · 서영석 · 송재호 · 인재근 · 김남국 · 김영진 · 이성만 · 김병욱 · 문정복 · 오영환 의원 발의)
이상 3건 4월 16일 회부됨

항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박상혁 의원 대표발의)

(2021. 4. 16. 박상혁 · 최인호 · 김정호 · 김윤덕 · 박정 · 진성준 · 어기구 · 임오경 · 이정문 · 양향자 · 허영 · 윤후덕 · 이용빈 · 홍기원 · 문정복 · 서영석 의원 발의)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조오섭 의원 대표발의)

(2021. 4. 16. 조오섭 · 강은미 · 송갑석 · 문진석 · 이학영 · 윤영덕 · 최종윤 · 민형배 · 이형석 · 양향자 의원 발의)

이상 2건 4월 19일 회부됨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홍기원 의원 대표발의)

(2021. 4. 19. 홍기원 · 강준현 · 고영인 · 고용진 · 기동민 · 박상혁 · 박영순 · 이규민 · 이원욱 · 임호선 의원 발의)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홍문표 의원 대표발의)

(2021. 4. 19. 홍문표 · 김희곤 · 김태호 · 추경호 · 권성동 · 유의동 · 허은아 · 엄태영 · 성일중 ·

서일준 의원 발의)

이상 2건 4월 20일 회부됨

**장애인·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심상정 의원 대표발의)

(2021. 4. 20. 심상정·강민정·강은미·정성호·
이은주·류호정·이수진(비)·배진교·이소영·
용혜인·장혜영·최혜영 의원 발의)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윤덕 의원 대표
발의)

(2021. 4. 20. 김윤덕·송재호·강준현·정춘숙·
한병도·강훈식·강병원·조오섭·문정복·
안호영 의원 발의)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한병도 의원 대표발의)

(2021. 4. 20. 한병도·김민철·안규백·오영환·
김수홍·정일영·김승원·정태호·신영대·
권인숙·윤준병·김민석 의원 발의)

이상 3건 4월 21일 회부됨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문정복 의원 대표발의)

(2021. 4. 21. 문정복·강선우·기동민·민병덕·
박성민·양정숙·양정숙·오영환·우원식·
유정주·이수진·이용빈·장경태·장철민·
최혜영·홍성국 의원 발의)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홍기원 의원 대표
발의)

(2021. 4. 21. 홍기원·박상혁·최종윤·김민기·
김주영·안규백·이정문·신동근·고영인·
기동민·이규민·윤준병 의원 발의)

수도권정비계획법 일부개정법률안(김윤덕 의원
대표발의)

(2021. 4. 21. 김윤덕·윤재갑·양향자·강훈식·
한병도·이학영·윤준병·안호영·정춘숙·
김철민 의원 발의)

**국무위원후보자(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 인사청문
요청안**

(2021. 4. 21. 대통령 제출)

이상 4건 4월 22일 회부됨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정일영
의원 대표발의)

(2021. 4. 22. 정일영·고용진·김경협·김병주·
김정호·김종민·김주영·맹성규·민형배·
소병철·송영길·신동근·양정숙·양향자·
유동수·윤관석·윤준병·이원욱·주철현 의원
발의)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최종윤 의원 대표

발의)

(2021. 4. 22. 최종윤·맹성규·백혜련·이규민·
오영환·인재근·조오섭·임오경·김영호·
이인영·민병덕·양이원영·허영·이수진(비)
의원 발의)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정일영 의원 대표발의)

(2021. 4. 22. 정일영·고용진·김경협·김병주·
김정호·김종민·김주영·맹성규·민형배·
소병철·송영길·신동근·양정숙·양향자·
윤관석·윤준병·이원욱·주철현 의원 발의)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조웅천 의원 대표발의)

(2021. 4. 22. 조웅천·강준현·김교홍·문정복·
문진석·박상혁·박영순·윤준병·장경태·
조오섭·천준호 의원 발의)

이상 4건 4월 23일 회부됨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선교 의원 대표
발의)

(2021. 4. 23. 김선교·이철규·박대수·김예지·
안병길·성일중·이양수·추경호·김석기·
권성동 의원 발의)

4월 26일 회부됨

○의안 철회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박상혁 의원 대표
발의)

(2021. 4. 2. 박상혁·어기구·민형배·김철민·
홍기원·이정문·서영석·신동근·박정·
진성준·김성주·김정호 의원 발의)

4월 9일 발의자 철회 요구